

연구보고 2017-05



KICE
KICE
KIC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정림 이윤진 박현옥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17-05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정림 이윤진 박현옥

머 리 말

최근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하였던 한 장애아 어머니의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많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국가와 사회는 장애아 교육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던 반면, 아직은 우리 사회가 장애유아를 잘 포용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2012년도에 제정되었던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유아에 대한 보다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유아 보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교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으로 현장에서는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현장에서는 장애유아의 입학 거부 및 학급 축소를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수교사 배치 문제를 포함하여 장애유아 보육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유아들이 비장애유아들과 함께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 면담에 협조해주신 장애아통합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특수학교 교감, 교사, 자문으로 협조해주신 학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 참여자 분께 감사를 전한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은 아님을 밝혀둔다.

2017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직무대행 **이미화**

차 례

요 약	1
I.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13
3. 연구방법	13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18
II. 연구배경	19
1.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관련 법적 기초	19
2.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제도	29
3. 장애 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및 유아특수교사 수급 현황	52
4. 선행연구	56
III. 장애 유아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문제점	61
1. 사례분석	61
2. 관계자 심층 인터뷰	76
3. 소결	119
IV.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안	121
1.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향	121
2.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안	126
참고문헌	137
부 록	141
부록 1. 기관장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143
부록 2. 교사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144
부록 3. 학부모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145

표 차례

〈표 I-3- 1〉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14
〈표 I-3- 2〉 면접 참여 기관장 배경 특성	15
〈표 I-3- 3〉 면접 참여 교사 배경 특성	16
〈표 I-3- 4〉 면접 참여 학부모 배경 특성	17
〈표 II-1- 1〉 의무교육 관련 기초 법률	20
〈표 II-1-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의무교육 관련 조항	22
〈표 II-1- 3〉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내용	23
〈표 II-1- 4〉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내용	24
〈표 II-1- 5〉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의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내용	25
〈표 II-1- 6〉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내용	28
〈표 II-2- 1〉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31
〈표 II-2- 2〉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육과정	33
〈표 II-2- 3〉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육과정	34
〈표 II-2- 4〉 2017년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육과정	37
〈표 II-2- 5〉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유아보육과 교육과정	39
〈표 II-2- 6〉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 환경 지원 내용	42
〈표 II-2- 7〉 장애 발견 및 장애 진단, 장애인 등록 관련 법	43
〈표 II-2- 8〉 특수교육대상자 판정과 배치 관련 법률 조항 및 내용	46
〈표 II-2- 9〉 보육 및 교육 지원 내용 및 관련 법률	48
〈표 II-2-10〉 관련서비스 제공 관련 법률	50
〈표 II-2-11〉 장애 유아 교육비용 지원 관련 법률	52
〈표 II-3- 1〉 2016년도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53
〈표 II-3- 2〉 어린이집 설립 주체 및 운영 형태에 따른 장애 유아 배치 현황	54
〈표 II-4 1〉 장애 유아 선별, 장애 진단 및 판정 관련 선행연구	57
〈표 II-4 2〉 유아특수교사 배치 및 전문가 역량 강화 관련 선행연구	58
〈표 II-4 3〉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한 질적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선행연구	59
〈표 II-4 4〉 장애 유아 행·재정적 관련 선행연구	60

〈표 III-1- 1〉 사례분석 분석틀	61
〈표 III-1- 2〉 각 기관 특성 비교	75
〈표 III-2- 1〉 면접대상자 특성(1) 기관장	77
〈표 III-2- 2〉 면접대상자 특성(2) 교사	78
〈표 III-2- 3〉 면접대상자 특성(3) 학부모	79
〈표 III-2- 4〉 장애보육 현황 관련	86
〈표 III-2- 5〉 교사 및 인력 관련	95
〈표 III-2- 6〉 물적환경 관련	99
〈표 III-2- 7〉 프로그램 관련 주요 문제점과 대안	105
〈표 III-2- 8〉 현금 및 서비스 지원 관련	109
〈표 III-2- 9〉 기관 운영 관련 느끼는 문제점	112
〈표 III-2-10〉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취약점과 향후 개선방안	117
〈표 III-2-11〉 전달체계 관련	118

그림 차례

[그림 II-2-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47
[그림 II-3-1] 어린이집과 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 유아 수	55
[그림 IV-1-1]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향	122
[그림 IV-2-1]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안	127

요 약

1. 서론

가. 연구목적

-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 유아의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장애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인적환경, 물리적 환경, 관련 프로그램 제공, 재정적 지원, 기타 편의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여 이들 각각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였음.
- 특히 장애 유아의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장애 유아 담당 교사에 관한 규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목적으로 하였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한 특수교사와 장애 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규정이 만4세 까지로 확대된 현 시점에서, 특수교사 수급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등에 관한 파악이 필수적임.

나. 연구내용

- 다양한 장애 유아 보육·교육 기관에 따른 장애 유아가 받는 지원 등의 서비스 현황 및 서비스 양적·질적 차이, 이용만족도 등을 파악
- 장애 유아가 받고 있는 서비스 양적·질적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기관의 인적 환경,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제공, 재정지원 등) 등을 파악
- 장애 유아를 담당하는 특수교사와 장애 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급현황파악
- 장애 유아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개선방안 마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집단 면접

- 기관장, 교사, 학부모 면접
-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면접

사례조사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특수학교,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과 같은 4가지 유형별로 우수 사례 기관 방문

나. 연구범위

- 장애 유아를 중심으로 장애 유아 지원과 관련된 인적환경,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등의 제반 여건을 파악하였음.
- 장애영아와 학령기 아동은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

2. 연구배경

가.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관련 법적 기초

- 의무교육과 특수교육 대상 유아
- 의무교육 관련 기초 법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의무교육
 -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관련 법률

나.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제도

- 인적환경
-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교원 배치 및 교사자격
 - 유아 특수교사 및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 양성 과정
 - 유아특수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

-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 유아 담당 보육교사 양성현황

- 물적 환경
- 보육 및 교육관련 서비스 지원
 - 장애 발견 및 장애 진단, 장애인 등록
 - 특수교육대상자 판정과 배치
 - 보육 및 교육 지원
 - 관련서비스 제공
- 재정 지원

다. 장애 유아 교육 및 보육현황

- 보육 및 교육기관 현황
- 보육 및 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 유아 현황

라. 선행연구

- 국내 장애 유아 보육 및 교육 연구 현황
-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배치와 교육 전문가의 역량 강화
- 보육/교육기관 확보 및 질적 프로그램 운영
- 행·재정적 지원

3.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문제점

가. 사례분석

- 본 장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의 우수 사례 분석을 시도함.
 - 어린이집은 장애전담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고, 그 이외에 유아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있는 사립유치원 중 우수사례로 추천받은 곳을 중심으로 인적환경, 물적환경, 프로그램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각 특성을 분석함.

- 인적환경은 장애영유아 배치와 교직원 현황, 기타 지원인력 현황을 분석하였고, 물적환경은 시설 일반과 편의시설, 교실 환경, 외부 환경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은 장애아 보육 관련 특별한 프로그램과 가정 연계 및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현황을 중심으로 살핌.

□ 인적환경의 경우 특수학교와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간에는 교사 수급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됨.

- 특수학교의 경우 유아특수교사 수급이 제일 잘 되고 있는 편이었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교사를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어린이집의 경우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모두 장애유아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유아특수교사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선정한 기관의 경우는 어린이집일지라도 유아특수교사 수급이 그나마 수월한 편이었고, 그 이유는 교사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교사의 처우는 임금을 비롯한 경제적 여건, 복리후생적 측면, 보조 인력이 어느 정도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파악하였음.
 - 해당 기관들은 타 기관에 비해 1) 높은 임금수준, 2) 교사를 중심으로 한 복리 후생, 3) 원장의 배려와 의지가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또한 해당 사례분석 기관은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기관일수록 교사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 기관들의 공통점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에 따라 교사들의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음.
 -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차이보다는 기관장의 의지가 교사들의 욕구 충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물적 환경의 경우 우수사례로 선정된 기관인 만큼 다른 모든 기관에 대한 대표성은 없으나 향후 개선 방안이 있어 참고할만한 사항이 도출됨.

- B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만큼 다양한 시설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운동치료, 언어치료를 어린이집 내에서 운영하는 장점을 가짐.
 - S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이고 시설적 측면에서는 국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환경임.
 - 동 기관은 설립 당시 장애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핸드레일, 문, 화장실 등으로 구성됨.
 - B 특수학교의 경우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하여 통학차량이 필수였고, 치료실과 운동실 등이 마련되어 있고 보고 기구도 마련되어 있음.
- 프로그램의 경우 각 기관별 특색이 가장 많이 반영됨.
- B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은 완전 통합을 추구하지만 장애 정도에 따라 실내 활동반과 실외활동반을 구분하고 있음.
 - B 특수학교의 경우 통합이 불가능한 단점을 월 1회 인근 어린이집과의 통합 행사로 극복하고 있음.
 - M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의 의지로 가족지원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운영중이고 많은 호응, S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사 상 주로 사례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나. 관계자 심층인터뷰

- 본 연구에서는 장애아통합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기관장, 장애 유아를 둔 학부모, 장애아 보육과 교육을 하는 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FGI를 진행함.
- 장애 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함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유치원과 특수학교 관계자를 포함하여 기관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인터뷰 내용은 장애아 보육 현황, 교사 및 인력 관련, 물리적 환경, 보육서비스 및 프로그램, 재정 및 제도적 지원, 기관 운영전반, 전달체계에 대해 당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현실과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주력함.

- 장애아 보육현황 측면에서 당사자별로 입장 차이를 다소 보임.
 -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장애전담어린이집은 공통적으로 장애 유형과 판정을 입소 전에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하였음.
 - 교사의 경우 경계성 아동의 조기발견과 장애진단 및 배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음.
 - 학부모의 경우 기관 입소 시 관련 정보의 부재 및 치료 미지원을 어린이집 이용에 있어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인식하였음.
- 인적환경 관련은 현실적으로 어린이집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드러난 부분으로 분석됨.
 - 유아특수교사 수급의 문제, 일원화되지 않은 자격증 체계, 교사 간 협력의 문제를 기관장과 교사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학부모의 경우 본인 아이를 보살펴줄 수 있는 보육환경을 중요시하였음.
 - 한편 교사들은 교사 간 협력체계를 원하고 있었으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조 인력 내지 지원인력과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었음.
 - 학부모의 경우는 유아특수교사의 중요성과 함께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향상을 바라고 있는데 이는 곧 보육의 질 향상이라고 보고 있었음.
- 물적환경 관련해서는 공통적으로 시설의 열악함을 보고함.
 - 기관장과 교사는 시설의 열악함과 지역별 불균형한 인프라로 인해 장애 유아를 보육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며,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음.
 - 학부모는 물리적 공간 협소하여, 보육의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였음.
- 보육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보육과 관련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아 기관별, 담당교사별로 질적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임.
 - 기관장의 경우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장애 유아에게 초점이 맞춰진 매뉴얼 내지 중앙에서의 지원을 원하고 있었고, 교사의 경우 어린이집 자체 프로그램은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으나 가족지원과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음.

- 학부모의 경우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가 완전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이는 유치원에 보내던 어린이집에 보내던 통합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곳을 원한다는 요구의 방증임.
- 특히 유치원을 굳이 선호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로 보육에 중점을 둔 생활습관 형성에 장점을 언급하고 있었음.
- 재정 및 제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관장의 경우 기관 운영 관련 비용, 교사의 경우 인건비 지원과 인력 지원, 학부모의 경우 치료 지원 등에 각각 중점을 둬.
- 결국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유아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유아 모두 학부모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병행하고 싶은 욕구를 알 수 있었고, 기관 입장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운영비 지원을 원하였음.
- 교사의 경우 근무환경에 대한 배려가 최우선적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린이집 교사는 타 기관에 비해 낮은 급여와 높은 근무강도를 힘들어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사회복지사와 치료사 인력을 요구하였음.
- 기관 운영 전반과 관련하여 기관장은 실 운영자 입장에서 시간연장 보육의 어려움, 지역적 불균형한 운영, 무상보육 도입으로 역차별의 문제를 언급하였고, 교사는 열악한 처우와 전문성 격차 등의 근무환경을 언급하였음.
- 전달체계는 기관장과 교사, 학부모의 경우 모두 중앙 차원에서 장애 유아가 기관 이용부터 치료 지원까지 한번에 상담 받고 시행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원스탑 서비스를 원하고 있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지역별 여건과 예산에 따라 장애 유아를 위한 지원 체계가 상이하였고 이는 서비스의 분절을 초래하는 가장 큰 단점으로 보임.

4.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안

가.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체계 개선 방향

- 전국단위의 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 실태조사

- 장애영아 및 초등학교 입학유예아동, 초등학교 아동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필요함.
- 장애 유아 진단 및 배치 관련 개선 방향
 -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현 상태의 진단 및 배치 체계가 개선되어야 함.
- 인적 환경 개선 방향
 - 특수교사 배치 관련 중단기 및 장기수급 방안 마련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활용
 - 교사 복지 및 처우개선
 - 교사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원장 및 장애아통합반의 일반교사 지원
- 물적 환경 개선방향
 - 장애아통합 교실 면적에 대한 법적 기준, 장애아통합교실 반편성 기준, 장애 유아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함.
-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
 - 장애 유아 개별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장애 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 전달체계 관련 개선방향
 - 장애 유아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함.

나.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체계 개선 방안

- 중단기 방안
 - 전국단위 장애영유아 실태조사
 - 장애영유아 관련 전문가 집단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질문지 및 조사 지침

제작

- 조사내용 및 진행 전반의 총괄 및 관리감독은 국가정책연구기관이 수행
- 장애 유아 진단 및 배치 개선방안
 - 기존전달체계를 활용한 장애유아 진단과 배치 전담 인력 확보 및 운영지원
- 인적환경 개선 방안
 - 어린이집에 배치해야 하는 유아특수교사는 시·도교육청에서 선발하여(교원 임용시험 절차를 거쳐) 어린이집 파견 교사의 형태로 운영
 - 교원 수급을 위해 특수교육과가 있는 사범대학에 유아특수교육과를 신설하거나 특수교육과 또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유아특수교육을 복수전공 하도록 하여 필요한 인력 확보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 수당 추가 신설 및 대학평가에서 어린이집에 취업할 경우 임용률로 인정되지 않는 평가 체계 개선
 - 양성 학과를 신설하거나 비장애 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과정에 장애 유아 양성 과정을 포함
 - 고경력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특수교육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서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제공
 - 원장 및 장애아통합반의 일반교사 교육 및 연수 기회 제공
 - 보조교사 배치
- 물적 환경 개선 방안
 - 정부 주관 위원회 구성을 통한 물적 환경개선을 위한 장기방안 실현 준비
-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대상별, 장애유형별, 발달시기별에 따른 다양하고 체계적 형태의 맞춤형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장애 유아 개별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장애 유아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부모지원 프로그램, 비장애 형제를 포함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체계화되고 조직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전달체계 정비

- 전달체계 정비 및 조직화 방안
 - 기존 전달체계 활용하여 장애 유아 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 및 전달체계 간의 연계 기능 역할 담당
- 장기방안
 - 장애 유아 진단 및 배치 개선방안
 - 장애 유아의 진단 및 배치 체계 구축
 - 장애 진단 기준 표준화
 - 장애 유아의 검진부터 치료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한 관리
 - 인적환경 개선 방안
 - 특수교육과가 있는 사범대학의 유아특수교육과 신설 및 특수교육과 또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유아특수교육 복수전공 허용 시 해당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특수학교에 배치된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조건과 근무여건(근무시간 조정 등) 제공
 - 보조인력 배치로 장애 유아: 교사 비율을 1:1로 맞춤형 돌봄 제공
 - 물적 환경 개선 방안
 - 장애아통합 교실 면적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 장애아통합교실 반편성 기준 조정
 - 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
 - 장애 유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마련
 - 전달체계 정비 및 조직화 방안
 - 장애 유아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달체계 조직의 역할 및 기능 정비
 - 중앙 컨트롤타워 중심의 조직 구성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동등한 출발선 보장이라는 취지에서 유아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누리과정 실시 외 두 기관 간의 운영 시간 및 체계, 담당 교사 및 보조교사의 급여체계와 근무여건 등에 대한 격차 해소는 되지 못하고 있어 누리과정의 온전한 효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만 3~5세 장애 유아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규정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의 장애 유아는 교육부 주관의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정 받은 유아가 아니라는 이유로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어린이집을 의무교육 간주 기관으로 명시하여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장애 유아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뿐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대상자로서의 지원이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평등에 관하여 장애 유아 관련 학계 전문가, 전국장애아동보육기관제공기관협의회(이하 장보협), 전국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협의회(이하 장통협),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같은 관련 어린이집 단체 및 학부모 단체 등에서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도입된 2013년 이후 지난 몇 년 간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유아가 과거에 비해 다소 증가하긴 했으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 유아는 여전히 과반수를 넘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언급하였던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가 처한 상황을 국가에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보가 다른 어떤 시기보다 더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비장애 유아뿐 아니라 장애 유아에 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소임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착수하고자 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그

동안 2007년도에 김은영·이소현·유은영·송신영이 수행했던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2012년도에 이정림·김은영·엄지원·강경숙이 수행하였던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교육 현황과 선진화 방안 연구 및 권미경·최효미·최지은·김건희(2015)의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 라는 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장애 유아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장애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규정 및 장애 유아 담당 교사의 자격 강화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 유아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국가차원에서의 법과 제도적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도에 제정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만3~5세에 해당하는 장애 유아를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적 근거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장애 유아 입소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2011년도에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이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혹은 장애 유아 보육교사)가 장애 유아 3명당 1명씩 배치되어야 하고, 배치된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함(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교사 배치와 관련된 규정은 만5세 이상의 장애 유아에 대해서 2016년 3월1일, 만4세 2017년 3월1일, 만3세는 2018년 3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 유아 보육기관으로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및 일반어린이집(일반어린이집에서의 통합보육)이 있다. 한편, 장애 유아 교육기관으로는 특수학교(특수학교 유치부 및 유아특수학교)와 일반유치원(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 및 완전통합학급)이 있다. 이와 같이 장애 유아 보육·교육이 수행되는 기관의 형태는 다양하며, 이에 따른 법적 기준 및 특수교사 배치 현황,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 또한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가 궁극적으로는 장애 유아가 받는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 유아가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 유아에 비해 더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장애 유아가 소속된 어린이집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격차가 있다면, 이는 향후 발달에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장애 유아의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인 장애 유아 담당 교사에 관한 규정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현 시

점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토대로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를 위한 지원 체계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급선무이다. 부연하자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의한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규정이 만4세 까지로 확대된 현 시점에서, 더군다나 내년에 만3세로 적용 대상이 확대됨으로 인해 현장에서 특수교사 수급과 관련된 어려움은 없는지, 특수교사 수급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인지에 대한 현황 파악 등이 필요하다. 유아특수교사 수급 등에 관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수급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이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내용

첫째,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가 받는 지원 서비스 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둘째,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가 받고 있는 서비스 양적·질적 차이를 초래하는 요인(기관의 인적환경,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제공, 재정지원 등) 등을 파악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를 담당하는 특수교사와 장애 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급현황을 파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사 관련 수급 현황 파악 및 어린이집에 장애 유아 담당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수급을 위한 개선점, 요구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넷째,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가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국가 지원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 연구

장애 유아가 제공받는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련 제도 파악, 장애 유아의 진단과 배치로부터 관련서비스 지원 내용, 장애 유아 교육·보육 현황, 특수교사 수급 현황 등에 관한 내용을 관련법, 관련 선행연구와 통계 자료 등을 통하여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나.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장애아 보육기관 단체 및 학부모 단체 등의 관련자, 학계 전문가와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단체의 기능과 역할, 학부모 요구 등을 파악하고, 장애 유아 지원 현황 및 향후 개선 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련 정책 방안 등을 논의하고 검토하였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의 사무관 및 주무관과 사례조사 시 동행하여 관련 내용을 논의하였고,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과장, 사무관, 주무관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를 개최하여 장애 유아 서비스 제공 현황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동안 진행되었던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에 대한 내용을 다음 <표 I-3-1>에서 제시하였다.

<표 I-3-1>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구분	일시	참석자	자문내용/현장방문
자문회의	8. 23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유아특수재활과 교수	장애 유아의 보육·교육 현황
	8. 28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연구실장	장애 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수혜 현황 및 요구
	8. 29	삼성복지재단 팀장	삼성어린이집 장애 유아 보육 현황
	9. 1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 협의회 고문 경기발달재활센터장	장애 유아 보육에서의 현안 및 개선사항
	9. 5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장애보육현황과 문제점
서면 자문	11. 1 ~ 11. 3	유아특수재활과 교수 영유아보육학과 교수	정책 방안
	정책 연구 실무 협의회의	9. 4	보건복지부 사무관
9. 7		보건복지부 사무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방문
9. 13		보건복지부 사무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방문
9. 19		보건복지부 주무관	삼성장애아통합어린이집 방문
9. 29	보건복지부 과장, 사무관, 주무관	심층면담 결과 분석 및 특수교사 수급 관련 정책 방안	

다. 집단 면접

1) 기관장 면접

장애 유아 보육·교육기관별 기관장 면접을 실시하였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및 특수학교와 사립유치원(사립유치원의 특수학급)의 4가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관장 면접을 실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원장 3명, 각기 다른 3개의 장애아통합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3명, 장애아통합 민간어린이집 원장 2명, 특수학교 교장 1명, 사립유치원 원장 1명으로 총 10명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주로 개별적인 대면면접이나 서면면접을 실시하였으나, 2명을 소그룹으로 하여 면접한 경우도 1회 있었다.

〈표 1-3-2〉 면접 참여 기관장 배경 특성

구분	연번	연령대	성별	전공	소속기관 유형
기관장	01	50대 이상	남	사회 복지학	장애아전문어린이집(법인)
	02	40대	여	특수 교육학	장애아전문어린이집(민간)
	03	30대	여	특수 교육학	장애아전문어린이집(법인)
	04	40대	여	특수 교육학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국공립)
	05	40대	여	화학	장애아통합어린이집(국공립)
	06	30대	여	보육 · 아동학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민간)
	07	30대	여	사회 복지학	장애아통합어린이집(국공립)
	08	30대	여	사회 복지학	장애아통합어린이집(민간)
	09	40대	여	특수 교육학	특수학교(사립)
	10	50대 이상	여	유아 교육학	사립유치원(사립)

2) 교사 면접

장애 유아 보육·교육기관별 교사 면접을 실시하였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및 특수학교와 사립유치원(사립유치원의 특수학급)의 4가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교사 면접을 실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3명, 유아특수교사 5명, 특수인정교사 2명을 각각 개별적으로 대면 면접이나 서면면접을 실시하였고, 혹은 2명이상 소그룹으로 면접을 진행한 경우도 2회 있었다.

〈표 1-3-3〉 면접 참여 교사 배경 특성

구분	연번	연령대	성별	전공	소속기관 유형
교사	01	30대	여	유아 교육학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02	30대	여	유아 교육학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03	30대	남	유아 특수 교육학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04	30대	여	유아 특수 교육학	장애아전문어린이집, 특수인정교사
	05	30대	여	유아 특수 교육학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06	40대	여	영유아 보육학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07	30대	여	특수 교육학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특수인정교사
	08	40대	여	장애 보육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09	40대	여	특수 교육학	특수학교, 유아특수교사
	10	30대	여	특수 교육학	특수학교, 유아특수교사
	11	20대	여	유아 특수 교육학	사립유치원, 유아특수교사

3) 학부모 면접

장애아전문 및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특수학교에 장애 유아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5명 정도의 소그룹을 형성하여 집단면접을 실시하였고, 5명의 학부모에 대하여서는 개별적으로 서면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1-3-4〉 면접 참여 학부모 배경 특성

구분	연번	연령대	성별	전공	소속기관 유형
학부모	01	30대	여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02	30대	여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03	30대	여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04	30대	여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05	30대	여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06	30대	여	경영	장애아통합어린이집
	07	40대	여	미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08	40대	여	지질학	장애아통합어린이집
	09	40대	여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0	40대	여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

4)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면접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포함한 경기 북부, 경기 이천, 서울 중랑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 총 4명의 센터장들과 장애 유아 서비스 제공의 전달체계로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집단 면접을 실시하였다.

라. 사례조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특수학교, 사립유치원의 특수학급과 같은 4가지 유형별로 현장을 방문하여 기관의 물리적 환경, 인력구성, 장애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항 및 제반 편의시설 등을 관찰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더불어서 해당 기관의 기관장,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대상 면접을 실시하여 관련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4.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유아를 중심으로 장애 유아 지원과 관련된 인적환경,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등의 제반 여건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므로 장애 영아는 포함되지 않았다. 본 연구 기간과 비용의 제한으로 연구 대상의 제한뿐 아니라,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분석 결과가 아닌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관련 통계자료, 관련법과 제도 및 문헌을 통한 면밀한 검토, 기관 유형별 기관장, 교사, 학부모 및 전달체계 관련자들과의 심층적인 면접 및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보완하고자 하였다. 향후 장애영아로부터 학령기 아동까지에 걸친 보다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 기반의 자료를 통하여 연구결과가 분석되고 개선방안 등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배경

1.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관련 법적 기초¹⁾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만 3세부터 17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 유아는 비장애 유아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의무교육 대상자로 국가는 장애 유아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를, 부모와 보호자에게는 자녀의 취학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이처럼 비장애 유아에게 해당하지 않는 유아기 의무교육을 장애 유아에게 실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은 장애 유아의 교육 수혜율을 높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이처럼 3-5세 장애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유아특수교육 기관에 배치된 장애 유아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박현옥 외, 2011; 이소현 외, 2014). 한편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법이 제정되고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 이르기 까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장애 유아의 50%가 넘는 대상자가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교육부, 2016). 이처럼 교육부 소속 기관이 아닌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 유아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 것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9조에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 규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교육 지원의 근간이 되는 법적 기반을 1) 의무교육 관련 기초 법률, 2) 의무교육과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법률 등으로 구성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2장 1절 이하(pp. 20~31)에서 제시된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관련 모든 법 조항은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main.html>(2017. 10. 20일 인출)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가. 의무교육과 특수교육 대상 유아

1) 의무교육 관련 기초 법률

헌법 제 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며, 보호자는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 의무교육의 기초를 제시하였다. 이에 초·중등 교육법에서는 의무교육 실행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와 취학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유아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위한 특수학교의 교육목적 등을 제시하였다.

〈표 II-1-1〉 의무교육 관련 기초 법률

법령	관련 조항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초·중등 교육법 제 2장. 의무교육 <법률 제14603호, 2017.3.21., 일부개정	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④ 국립·공립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2.3.21.]

(표 II-1-1 계속)

법령	관련 조항
	<p>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p> <p>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p> <p>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p> <p>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3.21.]</p>
유아교육법	<p>제15조(특수학교 등) ①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가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유치원과의 통합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4.></p>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의무교육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비장애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을 제정하였다. 비장애 유아의 경우 현재 의무교육대상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하는데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와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의무교육 연한이 만 3세부터 18세까지로 확대 운영되도록 하였다. 다음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나타난

의무교육 관련 내용이다.

동법에서는 만3~6세 장애 유아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하고 해당 유아들에게 특수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한 반면,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장애 유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의무교육 간주 기관으로 여겨져서 장애 유아가 동일한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의무교육 관련 조항

조항	내용
제 3조 (의무교육 등)	<p>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p> <p>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p>
제6조 (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p>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9조 (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p>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를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p>

(표 II-1-2 계속)

조항	내용
제 19조(보호자의 의무 등)	<p>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p> <p>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7.></p> <p>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p>

3)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관련 법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치원 과정(만 3-5세)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대상자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 대상자라는 대전제 하에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어린이집 이용 대상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과 관련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영유아 보육법」에서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이 명시되어 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표 II-1-3>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내용

관련 조항	내용
제20조 (교육)	<p>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p> <p>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④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표 II-1-3 계속)

관련 조항	내용
제20조 (교육)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장애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과 취약보육 우선실시, 보육의 우선 제공, 무상보육 등의 조항을 명시하여 장애 유아 보육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한편, 「유아교육법」이나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과 같이 장애 유아 교육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장애 유아를 특수교육 대상으로 구분하고, 의무교육 대상으로 지정한 반면, 장애 유아를 위한 보육에서는 취약보육 중의 한 가지 형태로 간주되어 장애 유아 보육의 특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표 II-1-4〉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내용

관련 조항	내용
제3조 (보육 이념)	<p>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p> <p>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전문개정 2007.10.17.]</p> <p>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6.4.></p>
제26조 (취약보육 의 우선실시 등)	<p>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 2011.6.7.>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취약보육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취약보육의 종류와 실시 등에</p>

(표 II-1-4 계속)

관련 조항	내용
제26조 (취약보육 의 우선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 28조 (보육의 우선 제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0.9., 2010.1.18., 2011.6.7., 2013.8.13., 2016.2.3., 2017.3.14.> 4항.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제34조 (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및 「영유아 보육법」 과 더불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서는 보다 장애아동의 권리, 장애의 조기발견,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보육지원,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등에 관련한 조항을 마련하여 장애 유아의 보육/교육적 지원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표 II-1-5>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의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내용

관련 조항	내용
제4조 (장애아동 의 권리)	① 장애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및 유기·착취·감금·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② 장애아동은 부모에 의하여 양육되고,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나야 한다. ③ 장애아동은 인성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④ 장애아동은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복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표 II-1-5 계속)

관련 조항	내용
제4조 (장애아동의 권리)	<p>⑤ 장애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p> <p>⑥ 장애아동은 의사소통 능력, 자기결정 능력 및 자기권리 옹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p>
제8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p>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2.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3.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5. 제23조 제2항에 따른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6.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지원 제공기관"이라 한다) 등 복지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그 밖에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제 9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p>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규모 및 장애아동의 수를 고려하여 인근 지역과 통합하여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센터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표 II-1-5 계속)

관련 조항	내용
제 12조 (장애의 조기발견)	<p>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p>
제 17조 (개인별 지원 계획 의 수립)	<p>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복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제9조에 따른 지역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인력, 복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실시 및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보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이하 "장애영유아"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장애영유아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및 배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교원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p> <p>제32조(장애영유아 어린이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것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출 것 <p>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그리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역할을 명시하여 장애 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두 개의 전달체계 중 현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만이 하나 있을 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와 같은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를 위한 지원 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유치원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의 경우에는 2016년 기준 전국 19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장애 유아를 진단 및 평가하고 배치 받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보다 최근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6)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장애영유아의 조기진단 및 개입과 재활 및 발달 지원 관련 조항을 명시한 반면, 발달장애에 관련된 지원이 주요 내용이라는 제한점이 있다.

〈표 II-1-6〉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내용

관련 조항	내용
제23조 (조기진단 및 개입)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hr/> <p>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p>

(표 II-1-6 계속)

관련 조항	내용
제23조 (조기진단 및 개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1절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관련 법적 기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 유아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지정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내용과 관련된 법적 기반은 교육부를 근간으로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토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장애 유아의 상당수가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받고 있고, 어린이집이 의무교육 간주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재의 이원화된 체제에서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들이 교육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적 수혜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근간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비롯한 장애 유아를 위한 법적 기반은 최근 들어 많이 체계화 된 반면, 법적 기반만큼 현실적인 제도가 보조를 맞추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또한 살펴볼 수 있었다.

2.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제도

가. 인적환경

1)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원 배치 및 교사 자격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 유아를 위한 교원 배치에 관련한 법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 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장애 아동이 배치된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

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자격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시하였다.

이러한 교사 자격에 관련된 법령에 비추어 볼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자격을 갖춘 교사, 즉 교육부에서 발령하는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와 보건복지부에서 발령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라는 서로 다른 자격 종을 가진 두 영역의 전문가가 같은 기관에 배치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자격을 가진 교사가 어린이집에 근거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어린이집’이 ‘의무교육 간주 기관’이므로 보육교사만으로 운영되는 비장애 유아의 상황과 다르다. 따라서 의무교육 간주 기관인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법령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중 1명은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의 특수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과 배치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장애 유아 3명당 1명씩 배치되어야 하고, 배치된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표 II-2-1 참조). 이러한 특수교사 배치 규정은 2016년에는 만5세 이상, 2017년도에는 만4세, 2018년도에는 만3세 까지로 적용되어 시행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표 II-2-1 참조).

장애 유아를 위한 교원 배치에 있어서도 유치원의 경우에는 특수교사만 배치되는데 비해 어린이집에서는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다양한 자격 소지자가 배치되고 있다. 어린이집 특수교사의 경우에도 교육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특수교사 자격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 유아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자격을 갖춘 교사 배치가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교사의 자격 및 교사 양성 체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에 어떤 자격의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교육부 인정의 특수교사 배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 등에 관한 교사 현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 II-2-1>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

구분	자격
<p>어린이집 교육요건</p>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p>	<p>제15조(어린이집의 교육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1.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2.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한 어린이집(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제목개정 2011.12.8.]
<p>교원 배치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p>	<p>제 22조 3항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지원과 원활한 취학을 위한 보육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p>
<p>특수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과 배치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 시행령)</p>	<p>제5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①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특수교사의 자격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유치원 과정만 해당한다)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p> <p>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 <p>제6조(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배치) ①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수는 장애영유아 수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치된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영유아 수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2016년 3월 1일부터 2. 만 4세의 장애영유아: 2017년 3월 1일부터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2018년 3월 1일부터

2)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 양성 과정

다음에서는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교육 과정을 살펴보았다.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는 장애 유아를 담당하여 지도한다는 점에서 업무의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유아특수교사는 초·중등 교육법 제 21조와 유아교육법 제 22조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교육부, 2017a).

특별히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가 아닌 유아특수교사를 어린이집에 배치해야 하는 이유는 3-5세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따라 모든 의무교육대상자는 배치된 장소와 무관하게 질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동일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아특수교사를 의무교육 간주기관인 어린이집에도 배치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장애 유아 담당 보육교사와 유아특수교사는 서로 다른 자격 종별을 지니고 있으므로 각 전문가를 양성하는 양성 프로그램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역량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서로 다른 자격 종별을 지닌 두 전문가 집단의 양성 프로그램을 역량의 차이 등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린이집에 의무교육 대상자 배치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법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유아특수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

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교육부, 2017a)에 따르면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는 교직과목에서 2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전공과목에서는 특수교육 관련 전공 목을 42학점 이상,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을 38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구성된 두 개 대학의 유아특수교육과 교육과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다음 <표 II-2-2> 과 <표 II-2-3>에서 백석대학교와 나사렛대학의 유아특수교육과 교육과정을 소개하였다.

<표 II-2-2>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육과정

구 분	교과목명(한글)	학점	시수		
			이론	실습	계
학부기초군	유아발달	3	3	-	3
	특수교육개론	3	3	-	3
	유아특수교육	3	3	-	3
	장애아행동지원 및 중재	3	1	2	3
	장애 유아놀이지도	3	1	2	3
소 계	5과목	15	11	4	15
전공 '가'군	가족참여와 지원	3	2	1	3
	장애 유아사회·정서발달 및 교육	3	1	2	3
	장애 유아인지발달 및 교육	3	1	2	3
	장애아진단 및 평가	3	1	2	3
	지적장애 유아교육	3	2	1	3
	정서·행동장애아교육	3	2	1	3
	개별화교육과정	3	1	2	3
	장애 유아음악교육	2	1	1	2
	장애 유아건강교육	2	1	1	2
	유아동작교육	3	1	2	3
	유아교사론	3	2	1	3
	#현장관찰 및 실습1	1	-	1	1
	#현장관찰 및 실습2	1	-	1	1
	유아수학교육	3	1	2	3
소 계	14과목	36	16	20	36
전공 '나'군	유아교육과정	3	2	1	3
	유아교과교육론	3	1	2	3
	장애 유아의사소통발달 및 교육	3	1	2	3
	장애 유아적응행동발달 및 교육	2	1	1	2
	자폐성장장애아교육	3	2	1	3
	의사소통장애아교육	3	2	1	3
	학습장애아교육	3	2	1	3
	지체장애아교육	3	2	1	3
	청각장애아교육	3	2	1	3
	장애 유아미술교육	3	1	2	3
	유아과학교육	3	1	2	3
	#현장관찰 및 실습3	1	-	1	1
	#현장관찰 및 실습4	1	-	1	1
	소 계	13과목	34	17	17
전공 '다'군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3	1	2	3
	장애영유아 관찰 및 행동연구	3	2	1	3
	유아특수교육공학	3	1	2	3
	시각장애아교육	3	2	1	3
	유아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1	2	3
	영유아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1	2	3

(표 II-2-2 계속)

구 분	교과목명(한글)	학점	시수		
			이론	실습	계
전공 '다'군	통합 및 전문가협력	3	1	2	3
	유아논리 및 논술	2	2	-	2
	중복·중증장애아교육	3	2	1	3
소 계	9과목	26	13	13	26
총 계	41과목	111	57	54	111

자료: http://community.bu.ac.kr/ecse/sub1/sub1_2.jsp, 2017년 10월 12일 인출.

〈표 II-2-3〉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육과정

구 분	교과목명(한글)
1학년	특수아 발달심리 특수교육개론 유아특수교육개론
소 계	3과목
2학년	발달지체 유아 진단 및 평가 유아사회교육 유아생활지도 지적장애 유아교육 학습장애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과정 유아건강교육 유아언어교육 발달지체영유아행동지원 건강장애 유아교육 정서 및 행동장애 유아교육 #현장관찰 및 실습1 #현장관찰 및 실습2
소 계	14과목
3학년	개별과교육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 가족참여 및 지원 유아놀이지도 의사소통장애 유아 교육 ABA 기반 자폐범주성장애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교과론 발달지체영유아교육방법

(표 II-2-3 계속)

구 분	교과목명(한글)
3학년	영유아통합교육 유아수학교육 청각장애 유아교육 지체 및 중복장애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현장관찰 및 실습 심화 1 #현장관찰 및 실습 심화 2 교육봉사활동
소 계	13과목
4학년	유아특수교육연구법 유아과학교육 유아통합교육 유아특수교육 논이 및 논술 유아음악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신체운동교육 영유아특수학급환경론
소 계	9과목
총 계	41과목

자료: <https://cms.kornu.ac.kr/knucese/> 2017년 10월 12일 인출

장애영유아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데 반하여, 특수교사 양성 대학이 천안 이남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에 있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유아특수교육학과를 신설하거나 유아특수전공을 개설하여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학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

‘장애아동복지법’이 제정된 2011년 이후 대학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전공으로 양성하는 학과는 전국에서 2개 대학으로 3년제인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와 한국복지대학교 장애 유아보육과가 있다. 다음 <표 II-3-5> 와 <표 II-3-6>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두 개 대학 교육과정의 예시이다.

먼저, 연성대학교의 경우 2017년부터 변경된 보육교사 자격 기준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편한 내용을 반영한 예시를 <표 II-2-4>에서 제시하였다.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의 협조를 통하여 확보한 내부 자료에 의하면 첫째, 전공교과는 크게 보육자격 교과목과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교과목으로 나누어 편성되었고, 보육교사 자격 관련 교과목은, 교사 인성영역인 보육교사론, 아동권리와 복지 등 총 19과목(57학점)으로 편성하고,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관련 교과목은 특수교육학개론 등 총 12과목(36학점)으로 편성하여 보육교사 및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한다.

둘째, NCS교과목은 놀이지도 등 7개 교과목(21학점)으로 구성되었고, 자체개발 교과목은 특수아동의 이해 등 총 13개 교과목(38)으로 구성되었고, 그 외 대학 자율편성 교과목은 16개 교과목 47학점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내부자료). 전반적으로 기존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지만 보육교사의 인성을 위한 교과목이 강화되었으며, 특수교육교과목의 경우 실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의 시수를 일부 조정하였다고 한다.

다음으로 한국복지대학교의 교육과정 예시를 연성대학교 교육과정에 연이어 <표 II-2-5>에서 제시하였다.

〈표 II-2-4〉 2017년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육과정

구분	교과목명	1 학년						2 학년						3 학년						합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학점	주당 시간	실 습	NCS적용 (N/D/X)		
		학점	주당 시간	학점	주당 시간	학점	주당 시간	학점	주당 시간	학점	주당 시간	학점	주당 시간	학점	주당 시간	학점	주당 시간						
		강의	실습	강의	실습	강의	실습	강의	실습	강의	실습	강의	실습	강의	실습	강의	실습						
진공선택	보육교사론	3	3															3	3		X		
	아동권리와 복지	3	3															3	3		X		
	영유아발달	3	2	1														3	2	1		D	
	특수교육개론	3	3															3	3		X		
	특수아동이해	3	2	1														3	2	1		D	
	놀이지도					3	1	2										3	1	2		N	
	아동음악					3	1	2										3	1	2		N	
	보육과정					3	2	1										3	2	1		D	
	보육학개론					3	3											3	3		X		
	정신건강론					3	3											3	3		X		
	특수교육역사와 사상					2	2											2	2		X		
	아동동작								3	1	2							3	1	2		N	
	아동미술								3	1	2							3	1	2		N	
	언어지도								3	1	2							3	1	2		N	
	아동안전관리								3	2	1							3	2	1		N	
	자원봉사론								3	1	2							3	1	2		D	
	정신지체아교육								3	3								3	3		X		
감각장애아교육											3	3					3	3		X			
영유아교수법본론											3	3					3	3		X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3	2	1			3	2	1		D		

〈표 11-2-5〉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유아보육과 교육과정

구 분	교과목명(한글)
전공필수	교재교구개발과 캡스톤디자인 어린이집운영관리(창업)
전공선택	부모교육론 감각장애아교육 개별화교육계획 기악1 기악2 놀이지도 보육과정 보육교사론 보육실습 보육학개론 사전실습 아동건강교육 아동과학지도 아동관찰 및행동연구 아동권리와 복지 아동문학교육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음악 언어발달장애 언어지도 언어치료학개론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발달 영유아보육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유아특수교육개론 자폐성장장애아교육 영유아교수법 장애아보육실습 장애영유아통합교육 장애진단및평가 정서 및 행동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 교육 지체장애아교육 특수아상담 및 가족지원 특수아행동지도

자료: <https://www.knuw.ac.kr/?p=93&mode=tab3&idx=4> 2017년 10월 12일 인출

이상에서 소개하였던 두 개 학교 이외는 4년제 대학으로 현재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에서 유아교육 전공 교수 3명과 유아특수교육 전공 교수 2명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한국성서대학교에서는 장애교과목 8과목(24학점)이 보육교사 과정과 함께 운영 되고 있다. 일반보육에 대한 이수과목이 많아서 일반보육에 대한 이해가 높아 통합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적용 및 효율성이 높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장애교과목이 24학점으로 유아특수교육학과에서 이수하고 있는 80학점에 크게 못 미치는 학점으로 특수교육 관련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측면이 있다. 한국성서대학교의 경우에는 유아특수교육 전공 전임 교수가 장애교과목을 가르치고 있고 장애아보육실습(4주간, 160시간)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²⁾

한편, 이상에서 언급되었던 학교 외에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양성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공 전임 교수가 없는 학교가 대부분으로 주로 외래 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아보육실습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취득 8과목에 대한 교과목 개요도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보육교사 자격 검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8과목에 대한 유사교과목 명으로도 교과목 이수를 인정받는 상황이다.³⁾ 장애 유아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 유아를 보육·교육하는 교원 양성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및 이에 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지점이다.

다)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 유아 담당 보육교사 양성 현황

(1) 유아특수교사 양성 현황

유아특수교사는 4년제 대학교와 교육대학원에서 양성되고 있다. 2017년 10월 현재 교원양성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 총 11개 대학에서 250명 내외의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에서도 약간의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교육대학원의 경우 총 14개 교육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육 전공을 설치하고 있으나 입학정원이나 자격증 취득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2) 2017년 9월 5일에 개최되었던 한국성서대학교 유아특수교육 전공 교수와의 자문회의 및 서면 자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내용임.

3) 2017년 11월 1주에 실시된 2명의 유아특수교육 전공 교수의 서면자문 내용을 토대로 함.

명시된 자료가 없다.

현재 기준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경우 교육대학원이나 특수교육 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다고 할지라도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실정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일부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할 시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반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로가 차단되어 있다. 이에 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장애 유아 보육교사 양성 현황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2개 전문대학에서 양성하고 있으며, 한국재활복지대학교에서 40명, 연성대학교에서 80명 총 120여명을 양성하고 있다. 앞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아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를 질 높은 서비스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과정에서 비장애 유아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과목, 실습과목, 특수교육 관련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과목 등과 같은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고 포함하여 교원 양성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물적 환경

국가는 장애 유아를 위하여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해야 하며,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치원 과정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학급을 설치한다고 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도 물리적 환경 지원 및 교재 교구비 등과 관련한 교육 환경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다.

한편, 조운경(2014)의 국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의 학급당 교재교구비 지원은 학급당 100만원 이하로 지방비로 지원받는 데 비해, 유아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학급당 300~500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통학지원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통학차량에 대한 별도 부담을 하고 있는 반면, 유아특수학교의 경우에는 통학지원이 전면 무료이고, 통학차량 지원비 통학비 지원이 이루어져서 장애 유아 1인당 월 12만원 상당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II-2-6〉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 환경 지원 내용

법률	관련 조항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p>	<p>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p> <p>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p> <p>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p> <p>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p> <p>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p> <p>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p>
<p>영유아보육법 시행령</p>	<p>제24조(비용의 보조)</p> <p>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p>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p>

다. 보육 및 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장애아동의 보육 및 교육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발견하여 장애 진단과 장애인 등록 과정을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판정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같은 선별 검사를 실시하며, 선별검사를 통해 발달상의 어려움이 의심되는 경우,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장애 진단 결과 발달상의 어려움이 의심되는 경우, 보육 및 교육 대상자 판정 절차를 거쳐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로서 보육 및 교육 지원을 받는다.

1) 장애 발견 및 장애 진단, 장애인 등록

「장애아동 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선별 및 진단 도구를 개발해야 하고, 선별 및 진단 비용 지원에 관련한 조항을 명시하였다.

〈표 II-2-7〉 장애 발견 및 장애 진단, 장애인 등록 관련 법

법률	관련 조항
<p>장애아동 복지 지원법</p>	<p>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3.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p> <p>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p> <p>제9조(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p> <p>제12조(장애의 조기발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p>
<p>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p>	<p>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23조(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표 II-2-7 계속)

법률	관련 조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하급교육행정기관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상의 절차를 거쳐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일정한 장애인 등록 절차를 거쳐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 3조에서는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장애 진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셋째,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넷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 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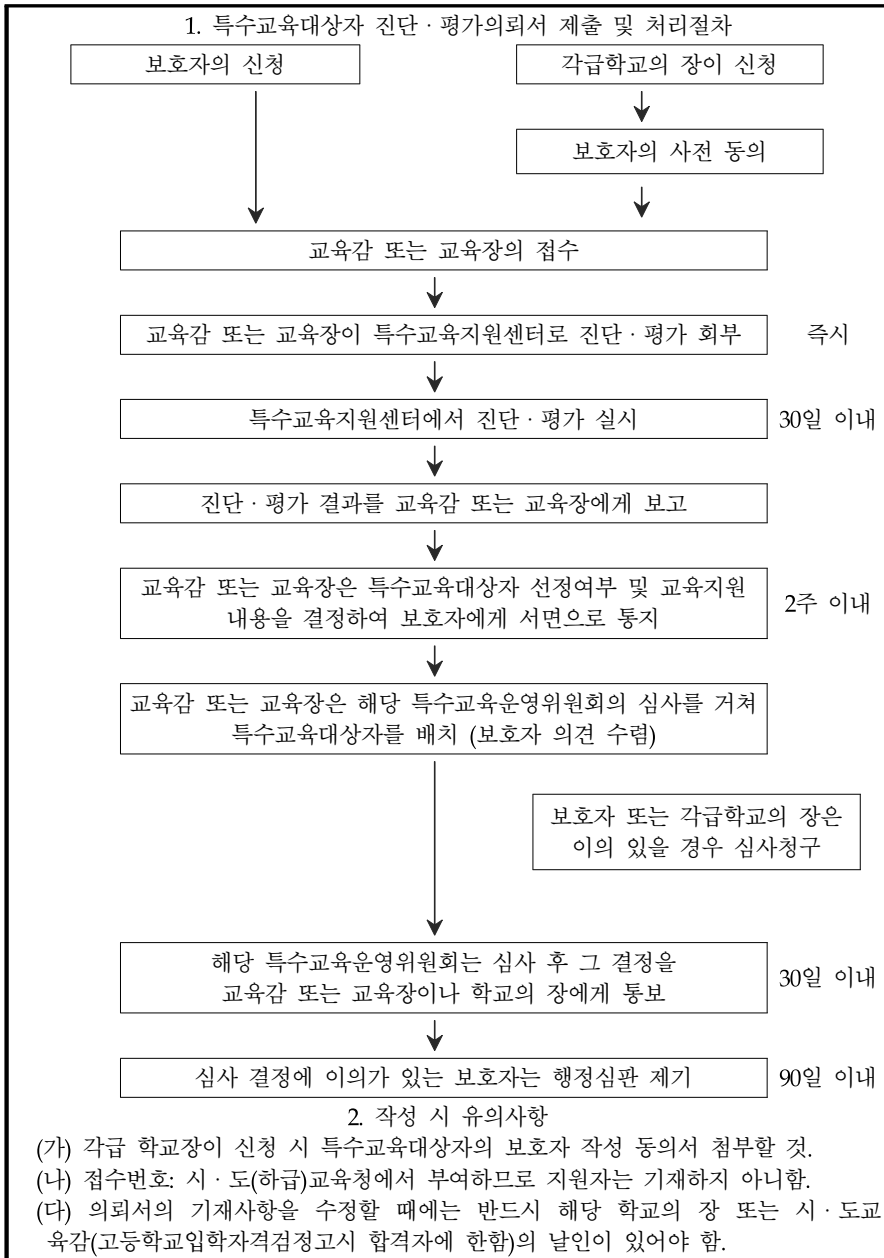
2) 특수교육대상자 판정과 배치

일정한 진단 절차를 거쳐 장애 진단을 받은 유아는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판정을 받게 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판정과 배치에 관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다음 <표 II-2-8>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판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음 <그림 II-2-1>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를 제시하였다.

어린이집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애 유아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림 II-2-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치원의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절차를 통해서만 특수교육 지원을 받는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만5세 이하인 경우에는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아동 및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8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보건복지부, 2017).

〈표 II-2-8〉 특수교육대상자 판정과 배치 관련 법률 조항 및 내용

관련 조항	내용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p>	<p>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p>	<p>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2.3.>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p> <p>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p>
<p>제16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p>	<p>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p>



자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그림 11-2-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3) 보육 및 교육 지원

장애 유아는 여러 관련 법령에 의해 대상 유아의 장애 정도 및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첫째,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둘째, 연령 및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교육 실시와 발달 지원, 셋째,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넷째, 통합교육의 실시 등이다.

〈표 11-2-9〉 보육 및 교육 지원 내용 및 관련 법률

지원 내용	관련 조항	법률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제4조(차별의 금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합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참여에서의 차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연령 및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교육 실시와 발달 지원	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종별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에게 적절한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표 II-2-9 계속)

지원 내용	관련 조항	법률
개별화 교육 프 로 그 램 운영	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
통합교육의 실시	제21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장애인 등 에 대한 특수교육법

4) 관련서비스 제공

장애 유아는 보육/교육 기관에서 특수 교육적 지원을 받는데, 그 외에도 이들의 장애 특성 등으로 인하여 여러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애 유아에게 제공될 수 있는 여러 관련 서비스 및 치료 지원 서비스를 명시하였다.

장애 유아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관련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①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의 치료 지원 서비스, ②행동지원, ③가족지원, ④보조공학기기 제공, ⑤보조인력 제공, ⑥통학차량 및 통학 보조인력 제공 등이 있다.

<표 II-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관련서비스는 관련 법률과 해당 부처에 따라 약간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 유아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특수교육 기관에 배치된 장애 유아와 동일한 관련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더불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지원법 등에 명시된 서비스도 지원 받을 권리가 있다.

〈표 II-2-10〉 관련서비스 제공 관련 법률

법률	관련 조항
<p>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p> <p>특수교육관 련서비스 제공</p>	<p>제 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p> <p>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가족지원)</p>	<p>제23조(가족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가족이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양육방법을 습득하고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 업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24조(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아동의 장애유형·장애정도와 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p>
<p>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동지원)</p>	<p>제30조(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을 적절하게 보호 및 양육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교육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p>

(표 II-2-10 계속)

법률	관련 조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동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행동지원)	제 21조(발달재활서비스지원)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동지원)	제24조(재활 및 발달 지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 및 행동문제 등의 완화를 위한 연구 및 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 재정 지원

장애 유아에 대한 재정 지원은 교육비를 포함하여 그 외 시설 설비비, 교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겠으나 장애 유아의 교육비용과 관련한 직접비용만을 다음 <표 II-2-3>에서 제시하였다.

교원 인건비의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의 특수학교의 교원에 대한 급여는 100%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 반면, 장애아전문이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인건비의 80%가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 20% 재원은 어린이집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는 월 20만원의 수당을 별도 지원받고 있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여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와 조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월20만원의 차량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표 II-2-11〉 장애 유아 교육비용 지원 관련 법률

법률	관련 조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조(의무교육 등).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보육료 지원 ¹⁾	만 3-5세 월 22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과정 및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지원 • 만 3-5세 아동의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은 중복 지원되지 않음

자료: 1)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IId=02&searchCtgId=001&wellnfSno=293&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l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17년 9월 13일 인출.

2)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IId=02&searchCtgId=001&wellnfSno=329&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l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17년 9월 13일 인출.

3. 장애 유아 보육 및 교육 현황 및 유아특수교사 수급 현황

가. 보육 및 교육기관 현황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 관련법과 지원 제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5세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로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 유아 교육 및 보육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가능 학교 및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부 산하의 교육 기관 유형과 그에 따른 기관 수, 학급 수,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은 <표 II-3-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부 소속 기관 유형은 특수학교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수학교 유치원은 기관 설립 유형에 따라 특수학교 내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학급과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일반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특수학급과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 유치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배치된 유아 수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특수학급에 가장 많은 2,504명이 배

치되었고, 다음으로는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 유치원에 1,744명이 배치되었다.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는 712명이 배치되었고,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226명이 배치되었다.

〈표 II-3-1〉 2016년도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단위 : 교, 학급, 명

년도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 유치원	계
		전체 특수학교 유치원(A)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2016	학교수	124	9	557	1,222	681
	학급수	260	55	640	-	900
	유아수	938	226	2,504	1,744	5,186

자료: 교육부(2016a). 특수교육연차보고서. pp.21, 44-45와 교육부(2016b). 특수교육 통계. p.30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다음으로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장애 유아가 배치된 어린이집의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린이집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장애 아동이 배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 형태에 따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계윤·박현옥·김주영, 2017).

〈표 II-3-2〉에는 설립 주체 및 운영 형태에 따른 어린이집 현황이 제시되었다. 장애 유아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6,158명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12년도에 일반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 유아 수가 4,740명이었던 것(이정림 외, 2012)에 비해 2016년도에는 1,635명으로 일반어린이집에 장애 유아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확연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장애 유아를 담당하는 유아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없이 장애 유아가 속해있는 학급의 담임교사가 장애 유아를 돌보거나 혹은 학부모나 원장의 지원으로 장애 유아를 위한 보조교사가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젠 더 이상 장애 유아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인력 없이 장애 유아가 보육 받는 것을 원치 않는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보인다.

나. 보육 및 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 유아 현황

〈표 II-3-2〉 어린이집 설립 주체 및 운영 형태에 따른 장애 유아 배치 현황
(단위 : 기관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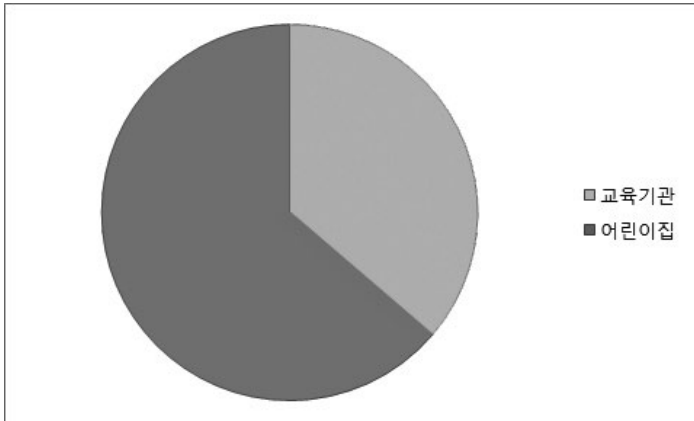
구분	국·공 립	사회 복지 법인	법인 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장애 아 어린이집	42 (1,249)	103 (3,915)	6 (210)	25 (767)	1 (17)	0 (0)	0 (0)	177 (6,158)
취 원 어린이집	667 (2,997)	37 (174)	34 (195)	150 (668)	15 (20)	1 (0)	7 (25)	911 (4,079)
어 린 이 집	97	79	48	799	282	7	30	1,342 (1,635)
소 계	806	219	88	974	298	8	37	2,430 (11,872)

자료: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130, 132.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 유아 현황은 <표 II-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에 각각 6,158명, 4,079명, 1,635명의 유아가 배치되어 총 11,872명의 장애 유아가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5,186명이 지원 받고 있는 특수교육 기관 배치 유아 수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러나 이 수치 안에는 0-2세 장애 영아와 입학유예아동도 포함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3-5세 장애 유아의 수는 제시된 수치 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연령별 어린이집 배치 유아의 수가 명확하게 제시된 통계 자료가 없어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이계윤 등(2017)은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장애영아와 장애 유아의 교육 수혜 비율을 11% : 89% 정도로 보고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어린이집 취원 장애영유아 10,232명에 적용하여 2016년에는 9,106명의 장애 유아가 3-5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정리하자면 2016년 한 해 동안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는 약 14,292명이며 그 중 교육 기관에 배치된 유아는 5,186명이고 어린이집에 배치된 유아는 9,106명으로 교육 기관 배치 유아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치를 알 수 있다(표 II-3-1 참조).



주: 특수교육연차보고서, 특수교육 통계와 보육통계를 토대로 구성하였음.
 자료: 1) 교육부(2016a). 특수교육연차보고서. pp.21, 44-45와 교육부(2016b). 특수교육 통계. p.30.
 2)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p.130, 132.

[그림 II-3-1] 어린이집과 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 유아 수

이처럼 3-5세 장애 유아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기관과 보육기관에 배치되어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유아는 전체 장애 유아 중에서 매우 적은 수치를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보육 통계를 근거로 살펴본 이계윤 등(201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등록된 장애영유아는 73,470명이며, 이 중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영유아는 11,872명으로 전체 장애영유아의 16.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계윤·박현옥·김주영, 2017). 또한 교육 기관에서 교육 지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수에 비해 1/3 정도에 불과하고 초등학교 학령기가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의 6년간이고 유치원 과정이 3년이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초등학교 학생 수에 비해 여전히 적은 수의 장애 유아가 의무교육을 수혜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계윤·박현옥·김주영, 2017).

이는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대상자들의 의무교육 수혜율이 매우 낮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는 결과이고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무성을 다하지 못하였고, 부모 역시 자녀를 의무교육 기관에 취학 시켜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상에서 논의되었던 바와 같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없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통계 자료인 장애영유아 수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심각성이 관련 학계 및 단체, 학부모 단체,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론화되어 장애 유아를 위한 현황 파악 등을 포함한 장애 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정보 수집을 위한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 유아는 물론 장애 영아와 초등학교 입학 유예 장애 아동, 방과후 과정 참여 장애 아동 수 등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막연한 추정치로 장애 유아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중차대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는데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일 수 있다. 복지 정책의 기초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논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4. 선행연구

가. 국내 장애 유아 보육 및 교육 연구 현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의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해서는 첫째,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을 통한 의무교육 수혜율 확보, 둘째,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배치와 교육 전문가의 역량 강화, 셋째, 보육 및 교육 기관 확보 및 질적 프로그램 운영, 넷째, 행·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이소현·박현옥·이수정·오세림, 2013). 이에 따라 국내 장애 유아 지원 관련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위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조기 발견 체계 구축을 통한 의무교육 수혜율 확보

장애 유아에 대한 교육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자 발견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적극적인 선별 절차와 장애 진단 절차 등을 통해 장애 위험 유아 및 장애 유아를 발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 진단을 실시한 후 장애 진단 과정과 교육대상자 판정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즉, 적극적

인 조기 발견 체계가 구축될 때, 비로소 교육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II-4-1〉 장애 유아 선별, 장애 진단 및 판정 관련 선행연구

출처	관련 내용
김성애(2009) ¹⁾	의무교육 실행을 위한 대상자 발견, 진단, 평가 인프라 확립
박현옥 외(2010) ²⁾	의무교육 대상자 판별 체계 구축 의무교육 대상자 적격성 기준 마련
박현옥 외(2011) ³⁾	대상자 발견 및 특수교육대상자 판정 및 배치, 대상자 발견을 위한 홍보
이병인 외(2011) ⁴⁾	의무교육 간주 기관으로 어린이집에서의 의무교육 시행 홍보
이소현(2006) ⁵⁾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 개념 도입, 적극적인 대상자 발견 제도 도입, 장애 진단과 특수교육 대상자 적격성 도입
이소현, 김주영, 이수정(2007) ⁶⁾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제도, 장애 아동 추적 관리 시스템 개발, 선별의 중요성 및 방법 홍보
이소현 외(2014) ⁷⁾	장애진단 시 진단 기관과 교육 기관의 연계 필요
조윤경(2009) ⁸⁾	장애 유아 조기 발견을 위한 조기 선별 및 진단 평가 체계 확립

자료: 1) 김성애(2009). 특수교육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반 요건 고찰: 발견 및 진단·평가, 교사,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4(1), 213-236.

2) 박현옥·강혜경·권택환·김은주·김진희·백유순(2010).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실행을 위한 질적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0(3), 209-239.

3) 박현옥·강혜경·권택환·김은주·김진희·백유순(2011).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실시 방안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1(3), 175-204.

4) 이병인·이지효·이미정·김현수·이지예·강성리(2011). 보육시설에서의 유아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시행에 대한 시설장의 인식 : 포커스 그룹 인터뷰, 유아특수교육연구, 11(10), 73-105.

5) 이소현(2006).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질적 구성 요소: 정책적 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6(2), 83-107.

6) 이소현·김주영·이수정(2007).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및 포괄적 지원 모형 개발. 유아교육연구, 27(1), 351-379.

7) 이소현·이수정·박현옥·노진아·윤선아(2014). 장애 유아 의무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지원 요구, 특수교육학 연구, 49(1), 373-401.

8) 조윤경(2009). 장애 관련법을 통해 본 장애아 보육의 질적 제고 방안 모색. 특수교육, 8(1), 163-183.

2)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배치와 교육 전문가의 역량 강화

장애 유아 의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의 동향과 지원 요소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아특수교육 기관이나 어린이집 등과 같은 모든 배치 환

경에서 유아특수교육 전문가 배치는 장애 유아 교육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애, 2009; 김성애, 2011; 박현옥 외, 2010; 박현옥 외, 2011; 이소현 외, 2014). 더불어 유아특수교사의 역량 강화(이병인, 김현숙, 2012; 정소영, 2017)와 교사의 처우 개선(조운경, 2009)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배치와 교사의 전문성 강화는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의 질적 담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2017년도 특수학교 운영 계획’에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성과를 제고하는 것을 주요 운영계획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17b).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표 II-4-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II-4-2> 유아특수교사 배치 및 전문가 역량 강화 관련 선행연구

출처	관련 내용
김성애(2009) ¹⁾	유아특수교사 배치
김성애(2011) ²⁾	유아특수교사 확보
박현옥 외(2010) ³⁾	유아특수교사 배치
박현옥 외(2011) ⁴⁾	유아특수교사 배치
이병인, 김현숙(2012) ⁵⁾	유아특수교사의 역량 강화
이소현 외(2014) ⁶⁾	자격 있는 유아 특수교사 배치
조운경(2009) ⁷⁾	자격 있는 교사 확보 및 처우 개선
정소영(2017) ⁸⁾	교사의 임파워먼트 향상 프로그램 활용과 연구

- 자료: 1) 김성애(2009). 특수교육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반 요건 고찰: 발견 및 진단·평가, 교사,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4(1), 213-236.
- 2) 김성애(2011). 장애아동 이용 보육시설 통계 현황을 통한 특수교육 유치원 의무교육 간주 가능성과 한계성탐색, 유아특수교육연구, 11(1), 41-71.
- 3) 박현옥·강혜경·권택환·김은주·김진희·백유순(2010).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실행을 위한 질적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0(3), 209-239.
- 4) 박현옥·강혜경·권택환·김은주·김진희·백유순(2011).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실시 방안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1(3), 175-204.
- 5) 이병인·김현숙(2012). 특수학교 유치원의 질적 운영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인식 및 요구조사. 유아특수교육연구, 12(3), 25-47.
- 6) 이소현·이수정·박현옥·노진아·윤선아(2014). 장애 유아 의무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지원 요구, 특수교육학 연구, 49(1), 373-401.
- 7) 조운경(2009). 장애 관련법을 통해 본 장애아 보육의 질적 제고 방안 모색. 특수교육, 8(1), 163-183.
- 8) 정소영(2017). 장애 유아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의 관계, 유아특수교육연구, 17(3), 213-231.

3) 보육/교육기관 확보 및 질적 프로그램 운영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자격 있는 교사를 배치해야 하며(김성애, 2011), 보육/교육 기관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김성애, 2009). 이러한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질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요소로는 첫째,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박현옥, 2010; 이병인, 김현숙, 2012; 이소현 외, 2014), 둘째,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박현옥 외, 2010; 박현옥 외, 2011; 이소현 외, 2014; 조운경, 2009), 셋째, 체계적인 장학 지도와 교원 연수(박현옥 외, 2011; 이병인, 김현숙, 2012)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3〉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한 질적 프로그램 운영 관련 선행연구

출처	관련 내용
김성애(2009) ¹⁾	교육기관과 어린이집에서 질적 교육과정 운영
김성애(2011) ²⁾	보육 시설에서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유아특수교사 배치
박현옥 외(2010) ³⁾	체계적인 장학지도,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관리, 개별화교육 실시
박현옥 외(2011) ⁴⁾	의무교육 실시 기관의 책무성: 교직원 연수, 개별화교육 실시, 지속적인 장학지도
이병인, 김현숙(2012) ⁵⁾	질적 교육과정 운영 전문적인 장학과 평가
이소현 외(2014) ⁶⁾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지원, 개별화 교육계획
조운경(2009) ⁷⁾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자료: 1) 김성애(2009). 특수교육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반 요건 고찰: 발견 및 진단·평가, 교사,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4(1), 213-236.
 2) 김성애(2011). 장애아동 이용 보육시설 통계 현황을 통한 특수교육 유치원 의무교육 간주 가능성과 한계성탐색, 유아특수교육연구, 11(1), 41-71.
 3) 박현옥·강혜경·권택환·김은주·김진희·백유순(2010).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실행을 위한 질적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0(3), 209-239.
 4) 박현옥·강혜경·권택환·김은주·김진희·백유순(2011).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실시 방안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1(3), 175-204.
 5) 이병인·김현숙(2012). 특수학교 유치원의 질적 운영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인식 및 요구조사. 유아특수교육연구, 12(3), 25-47.
 6) 이소현·이수정·박현옥·노진아·윤선아(2014). 장애 유아 의무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지원 요구, 특수교육학 연구, 49(1), 373-401.
 7) 조운경(2009). 장애 관련법을 통해 본 장애아 보육의 질적 제고 방안 모색. 특수교육, 8(1), 163-183.

4) 행 · 재정적 지원

장애 유아를 위한 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관련 부처의 행·재정적 지원은 교육의 책무성이 시작되고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다. 이러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러 선행연구에서 언급하였는데 이는 의무교육 실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의무교육 간주 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련 법규 보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부처 간 협력 체계 마련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김성애, 2009; 박현옥 외 2011; 이병인 외, 2011; 이병인·김현숙, 2012; 이소현, 2007; 이소현 외, 2012; 조운경, 2007).

〈표 II-4-4〉 장애 유아 행·재정적 관련 선행연구

출처	관련 내용
김성애(2009) ¹⁾	의무교육 간주 시설에 대한 질적 기준 강화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관련법 보완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마련
박현옥 외(2011) ²⁾	발견에서 배치, 교육실행의 모든 단계에 대한 행정적 지원 특수교육 지원 센터 기능의 활성화
이병인 외(2011) ³⁾	의무교육 간주 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이병인·김현숙(2012) ⁴⁾	행·재정적 지원
이소현 외(2007) ⁵⁾	부처간 협력
이소현 외(2012) ⁶⁾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조운경(2009) ⁷⁾	장애아 보육 정책 방향 정립

자료: 1) 김성애(2009). 특수교육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반 요건 고찰: 발견

및진단 · 평가, 교사,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4(1), 213-236.

- 2) 박현옥 · 강혜경 · 권택환 · 김은주 · 김진희 · 백유순(2011).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실시 방안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1(3), 175-204.
- 3) 이병인, 이지효, 이미정, 김현숙, 이지예, 강성리 (2011). 보육시설에서의 유아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시행에 대한 시설장의 인식 : 포커스 그룹 인터뷰, 유아특수교육연구, 11(10), 73-105.
- 4) 이병인 · 김현숙(2012). 특수학교 유치원의 질적 운영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인식 및 요구조사. 유아특수교육연구, 12(3), 25-47.
- 5) 이소현 · 김주영 · 이수정(2007).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및 포괄적 지원 모형 개발. 유아교육연구, 27(1), 351-379.
- 6) 이소현·이수정·박현옥·윤선아(2012). 장애 유아를 위한 일반 유아교육과정 기반의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에 대한 유아특수교사의 인식. 유아특수교육연구, 12, 59-90.
- 7) 조운경(2009). 장애 관련법을 통해 본 장애아 보육의 질적 제고 방안 모색. 특수교육, 8(1), 163-183.

Ⅲ. 장애 유아 어린이집 이용 현황 및 문제점

1.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중 장애 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 유아만을 교육하고 있는 특수학교, 장애 유아가 등원중인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각 기관의 분위기와 구체적인 운영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기관의 환경을 관찰하고 기관장,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통해 보육과 교육 현황을 파악하였다.

각 기관 현장 방문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분석틀을 구성하였고 해당 기관들이 우수 사례로 추천된 기관들인 만큼 특징적인 사항 등을 주로 담고 일반적인 사항들은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였던 사례분석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표 III-1-1〉 사례분석 분석틀

구분	범주
인적환경	장애 유아 배치
	교직원
	기타 지원인력
물적환경	시설 내 편의시설 및 환경
	면적
	외부환경
프로그램	가정 연계
	지역사회 연계
	운영 관련 일반 (운영시간, 내용 등)

가. 인적 환경

1) 장애아전문어린이집: B 장애아전문어린이집

B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70명의 장애아동과 약 40명의 비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한다. 이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총 정원의 40%의 비장애 아동을 받을 수 있게 한 결과이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3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동일하게 비장애 아동과 함께 21명으로 한 반을 구성하고 그 안에 장애아동이 3명이 포함되어 반을 구성하는 형태이다.

교사 인력과 관련해서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이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8명, 특수(인증보육) 교사가 5명, (유아) 특수교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교사인 경우에도 장애 영유아 보육현장에 종사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직원들은 자격증에 따른 유무에 상관없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성과 관리로 본인들의 질 향상을 내부적으로 도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그 이외에 치료사가 8명 추가적으로 상주하고 있었다.

평가시스템이 있는데 1그룹은 최우수 교사그룹이죠. 거기는 해외 연수라든지 또는 연가라든지 또는 1년에 인센티브 수당이라든지 100만원이든 얼마든지 이렇게 또 법인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1그룹은 주고 2그룹은 또 가능하면 연가도 더 줘요. 국가에서 주는 연가보다 ..(추가로 주고 있어요) (장애영유아보육교사 01)

한편 해당 재단에서 별도로 국외 연수를 통해 해외 사례를 직접 탐색하고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는 점이 독특한 예로 보여진다. 이러한 연수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사람만이 다녀올 수 있는 혜택으로 주어지고 있다. 교육훈련평가, 근무태도평가, 법인설립평가, 척도지 평가 등의 다면평가로 교사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본원에는 물리치료사가 상주하고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교사들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즉 전담인력이 상주하면서 국가연구비를 수주하고,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어린이집과 달리 사회복지법인 내 한 파트로 운영되다보니 규모가 상당히 커서 선생님들 간에 조직 서열이 정형화 되어 있었다. 수당 관리 역시 직책에 따른 수당과 특별수당 등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부장님, 팀장님 체제가 있어요. 저희는 너무 크다보니까 교재팀 이라든지, 홍보팀 이라든지 직책수당이 따로 있어요.(장애영유아보육교사 02)

교사들 인터뷰 결과 이러한 체제에 따른 정확한 보상, 그리고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사들의 출근 시간은 8시 25분으로 그 이외에 당직선생님이 7시 50분에 출근하여 공백을 메워주고 있었다. 마지막에 퇴근은 6시에 하되 당직선생님은 7시 반까지 업무를 함으로서 일 가정 양립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직원들 연가제도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고 업무가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 일과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빈다는 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는 제도가 좀 달라요. 4시에 가면 4분의 1가 반나절을 쓰는 2분의 1가 조금 선생님들이 조절할 수 있게 연가제도가 잘 되어있어요. (특수교사 01)

2) 장애아통합어린이집: M 장애아통합어린이집, S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두 군데를 사례조사 하였다. 우선 S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업 재단에서 출연하여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으로 애초에 설립 당시 장애통합을 주목표로 하고 시작하였다. M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수교육을 전공한 원장이 운영하는 특수성상 다른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비하여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유명하였다.

S어린이집의 경우 다른 어린이집에 비하여 급여 산정의 우월성으로 특수교사가 희망하는 어린이집으로 교사들 사이에 유명하였고, M어린이집의 경우는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기에 좋은 것으로 주관적 평이 있는 곳으로 유아특수교사 근무 여부로 각 어린이집의 전문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S어린이집은 총 원 136명 중 장애아동이 12명 채용 중 이었고, 특수교사 선생님은 4명으로 3:1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4명 중 2명은 특수교사, 2명은 장애아보육교사로 구성된다. 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비하여 유아특수교사가 상대적으로 근속년수가 5년 이상으로 길고, 두 명이나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장점을 지니고 있다.

M어린이집의 경우 유아특수교사가 1명,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6명으로 총 7명의 교사가 장애아교육을 전담하고 있었고 장애아동은 20명으로 교사 대 장애아동의 비율이 1:3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기관장 인터뷰를 통해 많은 교사

비율이 동 어린이집의 장점으로 꼽혔다.

S어린이집의 경우 역시 한 교실에 일반교사 2명, 특수교사 1명이 투입되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법상 최소요건인 1:3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였다.

처음부터 2대2였네요. 일반 보육시설은 일반교사 한분에 특수교사 한분해서 정원을 채우는데 저희가 일반교사 2, 특수교사 1분이어서서 교실에 3분 들어가시거든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교사 대 아동비율이 확 낮쳐져 있는 상황이라서 1대 3비율이라고 해도 혼자서 3명을 케어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관의 경우는 다른 기관보다) 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S어린이집 기관장)

유아특수 교사가 일 년에 전국에서 250명밖에 배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수교사에게는 일자리 선택을 함에 있어 좋은 환경을 중시여길 수밖에 없는 현실적 숙제를 안고 있다. 이 측면에서 S어린이집은 특수교사의 일자리 선택에 있어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이유는 1) 특수교사의 전문성 발현에 대한 배려, 2) 일반교사와의 협업 지원 이 우선순위로 파악된다.

처음부터 특수교사의 업무를 원장님들이 잘 배분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잘 지켜져 가고 있고, 저희가 특수교육 아이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그 시간에 온전히 할 수 있게끔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뭐 소개도 해드리고...(중략) 우리는 다른 곳보다 통합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S어린이집 특수교사)

3) 특수학교: B 특수학교

본 연구에서 사례조사를 한 특수학교는 유아특수학교로 3-5세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었다. 원장과 원감, 각 반별 담임 등으로 구성된 인력이었고, 특기 선생님이 별도로 상주하였다. 특수학교이기에 유아특수교사 뿐 아니라 초등 특수교사도 근무하였으나 현재는 유아특수교사만 남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장애아는 3, 4, 5세 각 1반씩 반별 3-5명이 재원 하고 있고, 총 인원은 20명이었다. 각 반별로 기본적으로 한명의 특수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보조 인력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지만 파트타임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실 때도 있었다. 학생 4명당 교사 1분이 담당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과목별 선생님이 따로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기에 선생님은 담임과 과목별 선생님이 구분되었다.

학교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일체가 지원되고 있었고, 차량 운행은 운행이 가능한 선생님과 원감, 행정원 등이 돌아가며 하였고 수업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병행하고 있었다.

4) (사립) 유치원: S 유치원

동 유치원은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 사립유치원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으로 특수학급이 한 학급 운영되고 있었고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각 연령별 학급이 구성된 것이 아닌 한 학급이 구성되어 5세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이었다. 현재 총 3명의 장애 유아가 재원중이다.

특수교육과 교수인 이사장의 지원 하에 운영이 되고 있어 교사 관리와 시설 관리에 있어 다른 곳보다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언어치료사가 일주일에 한번 출근하여 특수학급에서 생활하면서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한편, 교사 연수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는데 전문가 연수, 학습적 연수 등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연수를 주로 진행하여 교사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 연수에 있어서 자체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교사 질 향상에 무엇보다 적극적이었다.

연수를 저희가 해요 자체적으로. 저희는 또 이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연수를 언제든지 원할 때 잡아요 (S유치원 특수교사)

나. 물적 환경

1)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동 어린이집은 숲유치원이라는 생태교육프로그램을 특성화시키고 있었고 주간보호센터와 아동발달지원센터를 함께 운영 중인 곳으로 사회복지법인 하에 어린이집이 속해있었다. 물적 환경은 현존하는 장애전담 어린이집 중 거의 최고라는 주관적 평이 나있는 곳으로 어린이집 주변의 산과 외부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인근 지역에 장애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이 한 곳이 그 지역과 인근 도시의 수요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

는 우리나라 장애영유아 시설의 열악함, 그리고 지역적 편차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아동발달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기에 특수치료실, 운동실, 미술치료실 등을 별도로 구비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물적 특징이었다. 한편 동 원에 재원 하는 유아들도 시설이 필요시 함께 사용할 수 있었으며 야외 환경 또한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장애영유아가 비장애 아동들과 분리되지 않는 완전 통합을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통학 차량을 4대 운영하고 있는데, 동 시설이 커버하는 지역이 그 지역 전체와 인근 지역까지 포함하므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다.

2) 장애아통합어린이집

S어린이집의 경우 철저히 장애영유아와 그 학부모 중심으로 시설이 구비되어 있었다. 문턱이 하나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화장실이 각 교실마다 배치되어 있어 각 반에 3명씩 현존하는 장애영유아를 중심으로 시설이 최대한 구비되어 있었다.

특히 복도의 폭이 매우 넓어 휠체어가 지나다니면서도 비장애 아이들이 충분히 보행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복도에 손잡이를 배치하여 보행이 손 쉽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또한 휠체어가 진입하고도 남은 공간을 확보하고, 내부에 마련하여 장애영유아의 보행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음이 돋보였다. 그 외에 교실 자체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 장애 통합 학급을 운영하는 데 있어 최소 요건을 충족하고도 그 이상을 확보하고 있음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어떤 어린이집에서도 자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실현하기 힘든 부분으로 파악된다. 차량 운행은 안전 문제 상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저희 반마다 문턱이 하나도 없고 현관도 문턱이 없이 경사로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복도랑 교실문 폭이 휠체어가 다닐 수 있을 만큼 폭이 다 넓게 설치되어 있고...(중략).. 핸드레일도 다 되어 있고 화장실 한칸에는 장애아동이 쓸 수 있는 자동센서 있는 변기가 설치되어 있고 시설적인 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S어린이집 원장)

3) 특수학교

동 특수학교의 경우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탓에 통학에 있어 통학버스 운행은 절대적인 사항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3층과 옥상 정원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지은 지 오래되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긴 하였으나 연령별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최대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동선을 짧게 설계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각 층마다 치료실이 구비되어 있으나 매번 사용하지는 않고 운동기구 역시 구비는 되어 있으나 사용이 빈번하지는 않았다. 보행이 어려운 유아들의 경우 사용하는 보조기구가 주로 구비되어 있고 나머지 용품들이 활용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옥상 마당은 실외 놀이를 할 경우 이용하고 있으나 매번 이용하기에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주로 각 교실에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별로 선생님들이 이동하며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4) (사립) 유치원

통합학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학습에 물리적 환경이 맞추어져 운영되고 있지는 않았다. 이는 전체 유치원생이 비장애 아동들이고 이 아동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장애 아동의 완전 통합을 추구하는 철학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복도 간격이 넓고 계단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시설을 도모하고 있었다. 화장실 역시 장애아동을 위한 시설로는 기능하고 있지 않아 화장실 보행 시 관련 교사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으로 보인다.

다. 프로그램

1)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동 기관은 자연생태교육이 주프로그램으로 특화되어 있다. 비장애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기에 장애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장애아동의 상태와 활동 가능성에 따라 그 강도를 조절하면서도 비장애 아동의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완전 통합을 지향한다.

장애아동의 특성상 부모들이 일하는 경우 시간연장보육을 운영할 수밖에 없지만 동 기관의 경우 거의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6시 이후로는 한두명, 어쩔 때는 네다섯 명이지만 거의 한 두 명이 평균이고 저희는 저녁식사 제공이 안 되거든요 일곱 시 반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 때문에 부모님들이 늦으시면 일곱 시 반까지 오시긴 하지만 아이들이 그때까지 있지는 않습니다. (B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기관장)

반은 세 반으로 구성되는 데 숲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이 상이하다. 완전 통합학급을 추구하기에 장애 정도별로 숲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반 구성이 달라졌다. 또한 이는 하루 종일 숲 활동을 하는가, 비장애 아동과 얼마나 함께 협업하며 숲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위주로 나뉘고 불가능한 유아들은 실내에서 주로 생활한다. 하지만 이 아이들 역시 동 기관의 기본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숲 활동에 언젠가는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숲 나눔부, 섬김부, 사랑부 부서가 세 부서이고요.... (중략)... 특성만 다른 게 숲 나눔부는 숲에서 숲 유치원 하는 거고 섬김부 같은 경우에는 숲 활동이 조금 적은 것뿐이에요. 바깥활동이 좀 적고.. 중증 장애아동은 포함이 못 되는 거예요. 같이 산에 올라가야 되고 바깥을 나가야되기 때문에.. (B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기관장)

기관 일과 중에 개별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주기적으로 언어와 운동, 재활 치료를 병행하나 치료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개별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집에서 사설로 치료를 받거나, 동 기관에 함께 개설되어 있는 발달지원센터에서 치료가 진행된다. 동 기관의 경우 어린이집과 발달지원센터가 함께 구성되어 있기에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숲유치원 중심이라는 특성상 신체적인 발달 지원, 정신적 치료 보다는 비장애 아동과 통합이 되어 자연스레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중시여기는 특징점을 내세우고 있다.

어머님들이 개별 치료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실 때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려요 치료적인 부분을 좀 포기할 수 있냐 물어보시고 숲은 좀 섞여서 가는 편이 있죠. 같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01)

방과후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방과후의 경우 초등학교

교 혹은 초등 특수학교에 적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 혹은 초등학교에서 교육부 지원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었다.

수업은 선생님들이 팀제로 운영하면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화합을 이루는 모습을 중시하고 있었으며 개인발달진도표를 짤 때에도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치료사가 팀 어프로치(team approach)를 통해 함께 논의하고, 향후 발달 상황에 대해 협의하는 시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다.

저희는 공동담임 체제로 해서 수업도 같이 준비를 하고,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보조교사 치료사 같이 하다보니까..(장애영유아보육교사 02)

2) 장애아통합어린이집

M어린이집의 경우 가족지원프로그램과 장애아 형제 지원 프로그램이 특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 동 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비목으로 지원이 되거나 지역사회에서 연계되는 부분이 없어 M어린이집의 자체적인 역량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결국 장애아 보육의 문제는 해당 아동의 발달 지원이나 사회통합 뿐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역시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부모님들 부부 간의 문제가 그 해에 유난히 많을 때가 있으면 데이트하기. 돈 드리고 데이트 하세요하고 애들 봐주기도 해봤고..(M어린이집 원장) .

또 다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인 B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 의사소통 자조모임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할 수 있는 모임을 진행하여 학부모들간의 정서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도 하였다. 이는 원장의 의지로 직결되는 문제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속성이 결정되는 요인이었다.

1차적으로 장애부모 학부모 의사소통 자조모임, 첫 번째 조건이 장애학부모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있어야 해요...저도 단 하나 원칙을 지킨 게, 장애학부모 모임을 10년 간 제가 해요 (B어린이집 원장)

한편 해당 어린이집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1년에 한번 운영하여 M어린이집에 비하여 주기적이고 여러 번 시행하고 있지는 못하였으나 주로 정서적 지원

측면에서 어떻게든 프로그램을 이어가려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1년에 한 번 부모교육. 그 다음에 힐링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약간 대략적인. 단기적으로..어린이집 자체적으로.. (B어린이집 원장)

S어린이집의 경우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프로그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주목할 수 있다. 다른 어린이집의 경우 경제적 여건상 사회복지사가 어린이집에 상주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동 기관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 이다보니 자체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와 특수교사간 교류와 연계 운영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가족프로그램,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이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운영되는 장점을 가진다. 특수교사의 경우 장애영유아 발달 특성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개별 프로그램과 단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회복지사의 경우 가족 연계프로그램,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었다. 이는 결국 통합적 팀어프로치를 통해 장애아, 장애아 가족, 지역사회간 연계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결고리를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마련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인다.

각각 통합에 대해서 지체장애 이러한 장애 특성 장애에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주시고.. 복지선생님이 저희 또 계시니까 그분 통해서 연계되는 것도 있고 ... 사회복지사가 계시니까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 하고 ..부모교육 이라 던지 이런 것들 복지선생님이 계획..(S어린이집 원장)

아이들의 일과는 대부분 동일했다. 하루 재원 시간은 오전 9시 반경부터 점심 먹고 그 직후까지가 대부분이었고 오후에 재원하는 아이들은 비장애 아동과 마찬가지로 오후 3시에서 4시 반 정도까지 기관에서 생활하였다. 다만, 장애아동의 경우 사설 치료를 대부분 받으러 다니는 탓에 대부분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하원 후 개별 치료를 받으러 가고 있었다.

학부모들의 경우 본인의 자녀가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 사설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싶고, 개선을 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할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머님들이 어떤거 하고 싶다 얘기를 하실 경우에는 관찰을 하고 필요하겠다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치료실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면 팜플렛이라든지 자료를 보내드리기는 해요..(S어린이집 원장)

S어린이집의 경우 주로 오전에는 놀이를 통한 완전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부모 교육을 진행한다. 년 1회 부모와 형제를 동반한 캠프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맞벌이 부모의 경우 시간을 따로 내기가 힘들어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진행되기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함께 섞여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 놓는 프로그램 그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욕구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 맞벌이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시간내시기 어려다 보이면 그런 것들을 하기에는 어려우면 저희도 진행 못하기도 하고.. (S어린이집 원장)

한편 S어린이집의 경우는 유예 학생을 아예 받고 있지 않은데, 필요한 사람에게 그 자리를 순환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목적, 교육적으로 유예가 좋지 않다는 교육적 판단에 의해서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동 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과 달리 아동학대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교사와 학부모들 간의 합의를 이루고 있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진 아동학대 매뉴얼은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특성과 반응이 다른 데에서 기인하고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짐에 따른 서로간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과학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저희가 장애아이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주기위해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단계를 나눠서 이런 행동을 보이면 1차는 이렇게 할까요 2차 이렇게 할까요 3차 이렇게 할까요 다 서술을 해서 부모님 동의를 받아서 그거 허용범위 안에서만 하고 있어요(S어린이집 원장)

또한 재단 자체의 지원으로 전문가 상담 내지는 필요시 프로그램 구성에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용이한 것도 장점으로 보여진다.

3) 특수학교

동 특수학교의 경우는 특수학교라는 특성상 모든 프로그램이 장애아동의 상태와 상황에 맞추어져 있다. 특이한 점은 방학 프로그램인데, 방학 때 원하는 학생은 통학이 가능하지만, 사설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선택적으로 방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마련하고 있었다.

한편 오전 프로그램, 점심, 오후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정규 일정 외에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언어치료, 감각치료, 통합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매우 짧고 제한적이었다.

선생님들은 각 일과 중에 아이들을 관찰하고 오후에는 개별 학생들의 발달 진도표를 작성하는데, 해당 선생님이 과목별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어 논의를 통해 발달 진도를 정하는 특징을 가진다.

4) (사립) 유치원

S유치원은 완전 통합학급 운영으로 장애 유아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동 유치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언어치료사가 주 1회 상주하면서 하루종일 장애아를 중심으로 언어 발달 상황을 세심히 관찰하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치료 목적으로 동 치료사가 상주한다기보다는 비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 모두 함께 선생님께 배우는 것으로 아이들 간 차별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주일 한 번 씩 오셔서 언어만. 언어를 봐주면서 사회성도 봐주고 다 볼 수밖에 없잖아요. 놀이하면서 같이 해주시는 거라서.. 조금 심한 친구는 밥을 부지런히 먹고 다른 아이들 밥 먹고 있을 때 와서 일반적으로 15분 정도..(S유치원 특수교사)

한편 어느 한 부분이 독립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도모 한다기 보다 여러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이 부분은 동 유치원이 완전 통합학급으로 운영되기에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

저희가 자연놀이 시간에 아이가 이걸 충분히 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지금 충분히 손실도 많이 경험해보고 실패도 성공도 경험해보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피곤할 것 같다는 등 (계획을 잡아드려요)... (S유치원 특수교사)

이 기관은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원장의 적극적 참여 하에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아동 발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한다. 이는 결국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업을 유도하고 기관 자체가 장애아동이 다니지만, 비장애 아이들과 무리 없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사, 일반교사, 학부모까지 이 분들이 손잡고 가지 않고는 그 누구도 통합에 대한 지원이 바르게 될 수 없다고 저는 조금 제 경험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S유치원 원장)

이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특수학급으로 운영되기에 입학에 있어 유치원 자체의 자율성이 많이 반영되기도 한다. 즉, 놀이평가를 통해 통합학급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고 입학이 허가된다. 놀이평가는 원 자체에서 마련한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고, 해당 유치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한지가 그 기준이 된다. 이에 장애 정도에 따른 판단이 아닌 원에 통합되어 학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또한 완전통합으로 운영되기에 비장애 아동 학부모들의 협조, 비장애 유아 교사들의 협조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사 채용 시에 장애 아동 재원에 대한 거부감, 본인이 통합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채용하고,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하도록 미리 고지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통합반 운영의 어려움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간 협력의 어려움으로 파악하고, 개별 발달 상황을 체크할 때 특수교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의 선생님, 다른 반 일반교사까지 참석하여 참여하는 형태로 발달상황을 체크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이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다.

라. 소결

사례분석 결과 각 기관의 특성은 다음 <표 III-1-2>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각 기관은 유형별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며 유형별로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적 구성 측면에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어느 정도 통합을 이루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장애아가 최대 인원수를 채우면서 통합 운영이 되고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 중증장애 아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이며 사립유치원 특수학급의 경우 워낙 인프라가 적어 어느 특정 지역의 한 곳으로 몰리는 경향이 심각함을 파악하였다.

교사의 경우 해당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이 대표적 사례로 꼽힐 만큼 특수교사 인력 수급이 쉽지 않았으나 1) 급여 수준, 2) 복리 후생, 3) 원장과의 협력체계, 4) 동료 교사와의 협업 등이 잘 이루어진 기관에 특수 교사는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물적환경의 경우 우수사례로 소개할 수 있는 동 어린이집의 경우마저도 열악한 모습을 보였는데 1) 장애아통합학급 면적의 협소함, 2) 주변 환경 및 실내 환경이 비장애 아동 중심으로 구성 되어 유명하게 소문난 곳이어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자본력의 규모가 상이한 결과 물적 환경은 매우 잘 갖춰져 있으나 이 역시 통합어린이집의 아주 극소수 일부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수학교의 경우 지역적 민감성으로 일부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 통학거리가 멀다는 점 등의 단점과 유아 대상 특수학교의 경우는 중증 장애인들이 주로 통합함에도 그 시설이 상대적으로 협소하다고 판단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주요 대상이 비장애 아동임에 따라 장애아를 위한 물적 환경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프로그램의 경우 장애아전문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그리고 사립유치원 특수학급의 경우 모두 통합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아를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기 보다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장애아가 적응을 하여야 하는 형태였고, 그 이외에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구체화, 정기화, 내실화 등으로 그 질이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가족지원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여타의 다른 기관보다 상세하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결국 특수 교사 혼자만의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닌 다양한 관련자들 간의 팀 협업이 중요한 프로그램에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장애 유아가 주축이 되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특수학교만을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점은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사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일체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반면, 장애 전문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매년 재단 측으로부터 적지 않은 비용의 재정 지원 없이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한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비롯하여 통합보육·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특수학교는 통합교육을 위해서 다른 어린이집과의 연계 수업으로 한달 1~2회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가 함께 더불어서 사는 세상을 지향해야 한다는 완전통합의 철학적 기초에는 어린이집이 더 선진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기관의 주요 특성을 반영한 내용을 다음 <표 III-1-2>에 제시하였다. 한편 최근 들어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장애영유아가 재

원하는 기관의 경우 이러한 특수성에 기반한 전반적인 매뉴얼이 갖춰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S어린이집의 경우 원 자체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벤치마킹하여 다른 여러 기관에서 사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I-1-2〉 각 기관 특성 비교

구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특수학교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인적 환경	비장애 아동 40% 재원, 일반교사 근무 안함 (장애아영유아보육교사 8명, 특수교사 7명, 특수(인증)교사 5명)	(공통) 3,4,5 세 각 3명씩 총 9명 재원, 장애영유아보육교사가 주로 근무하며 유아특수교사 1명 근무하는 곳이 드물(S어린이집만 유특교사 근무)	경, 중증 장애아가 혼합되어 있으나 주로 중증 장애아가 많이 재원, 특수교사 7명과 원감 원장으로 구성	총 3명 재원, 현재 5세반만 운영 중 유아특수교사 1명이 모두 돌봄, 일반교사와 함께 들어가서 각자 고유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서로 협력을 중점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상황
물적 환경	발달장애센터 운영으로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 등 별도로 마련된 숲유치원 운영으로 넓은 야외공간	(M어린이집) 표준규격에 일치하는 교실, 한 층에 모든 아이들 생활, 장애아동용 화장실 미비 (S어린이집) 장애영유아를 위한 최적의 환경으로 장애영유아 화장실은 물론 성인용 장애 화장실까지 별도 구비, 보건실 구비, 통로 간격 매우 넓고 내부에 별도 엘리베이터 존재	특수학교이다 보니 장애 유아 중심으로 학교 시설 구성, 하지만 다른 곳에 비하여 절대적인 자체가 큰 편은 아닌 한계,	특수학급이 한 학급이고, 완전 통합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유치원과 다른 특이사항은 찾아볼 수 없음
프로그램	완전 통합으로 숲유치원 활동이 기본, 활동이 심하게 어려운 경우 실내 활동으로 전환	표준보육과정을 반영한 어린이집 자체 프로그램 운영	장애 유아 중심 프로그램으로 전체 구성	누리과정과 더불어 숲과 자연을 중심으로 한 유치원만의 고유 활동이 돋보임

(표 III-1-2 계속)

구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특수학교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기타 특이 사항	주간보호시설 합 계 운영	장애아동학대 매 뉴얼 별도 존재	지역사회 일반 어린이집과 월 1 회 통합운영	초기에 스크리닝 시스템으로 유아 입학

2. 관계자 심층 인터뷰

가. 개요

본 절에서는 원장을 포함한 기관장 인터뷰와 장애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장애 영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와 서면면접을 진행하였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유아전문 특수학교와 일반유치원(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 및 완전통합학급) 유형별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각 기관의 특성을 면밀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원장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각 별도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달체계 현장에서 겪는 장애영유아 보육과 교육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진행은 심층인터뷰(deep depth interview)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병행하였는데 이러한 질적 연구는 정량적 방법을 통해서서는 파악할 수 없는 연구 대상자들의 심리적인 상태,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기에 적합하다.

장애영유아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본인이 개인적으로 장애영유아 보육에 관심이 있어 먼저 연구진에게 접촉을 시도한 기관장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였고 표집은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구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개인수준별 분석, 집단 내 분석, 집단 간 분석을 실시하면서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실태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관장과 학부모, 교사 차원의 다면적 면접을 진행하여 각 입장에 따른 현장 인식과 문제점 인식을 다차원적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이외에도 전달체계 측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FGI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전달체계 측면에서 장애영유아 보육 질 향상을 위한 합의

점을 찾고자 하였기에 해당 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면접 대상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2-1〉 면접대상자 특성(1) 기관장

단위: %(명)

구분	기관장			
	전체 (A+B+C)	어린이집 (A)	민간 특수학교 (B)	사립유치원 (C)
전체	100(10)	80(8)	10(1)	10(1)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7.5(3)	-	-
법인		25(2)	-	-
민간		37.5(3)	100(1)	100(1)
지역				
수도권	90(9)	87.5(7)	100(1)	100(1)
지방	10(1)	12.5(1)	-	-
성별				
남자	20(1)	12.5(1)	-	-
여자	80(9)	87.5(7)	100(1)	100(1)
연령				
20대	-	-	-	-
30대	40(4)	50(4)	-	-
40대	40(4)	37.5(3)	100(1)	-
50대 이상	20(2)	12.5(1)	-	100(1)
전공				
유아교육학	10(1)	-	-	100(1)
보육·아동학	10(1)	12.5(1)	-	-
특수교육학	30(3)	25(2)	100(1)	-
유아특수교육학	-	-	-	-
장애통합	10(1)	12.5(1)	-	-
사회복지학	30(3)	37.5(3)	-	-
영유아보육학	-	-	-	-
기타(화학과)	10(1)	12.5(1)	-	-
최종학력				
대졸	50(5)	62.5(5)	-	-
대학원졸 이상	50(5)	37.5(3)	100(1)	100(1)

〈표 III-2-2〉 면접대상자 특성(2) 교사

단위: %(명)

구분	기관장			
	전체 (A+B+C)	어린이집 (A)	민간 특수학교 (B)	사립유치원 (C)
전체	100(11)	73(8)	18(2)	9(1)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5(2)	-	-
법인		50(4)	-	-
민간		25(2)	100(2)	100(1)
지역				
수도권	64(7)	50(4)	100(2)	100(1)
지방	36(4)	50(4)	-	-
성별				
남자	9(1)	12.5(1)	-	-
여자	91(10)	87.5(7)	100(2)	100(1)
연령				
20대	9(1)	-	-	100(1)
30대	64(7)	75(6)	50(1)	-
40대	27(3)	25(2)	50(1)	-
50대 이상	-	-	-	-
전공				
유아교육학	19(2)	25(2)	-	-
보육·아동학	-	-	-	-
특수교육학	27(3)	12.5(1)	100(2)	-
유아특수교육학	36(4)	37.5(3)	-	100(1)
장애통합	9(1)	12.5(1)	-	-
사회복지학	-	-	-	-
영유아보육학	9(1)	12.5(1)	-	-
최종학력				
대졸	73(8)	62.5(5)	100(2)	100(1)
대학원졸 이상	27(3)	37.5(3)	-	-

〈표 III-2-3〉 면접대상자 특성(3) 학부모

단위: %(명)

구분	학부모		
	전체 (A+B)	어린이집 (A)	민간특수학교 (B)
전체	100(10)	90(9)	10(1)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67(6)	-
민간		33(3)	100(1)
지역			
수도권	100(10)	100(9)	100(1)
지방	-	-	-
성별			
남자	-	-	-
여자	100(10)	100(9)	100(1)
연령			
20대	-	-	-
30대	60(6)	67(6)	-
40대	40(4)	33(3)	100(1)
50대 이상	-	-	-
장애 유형			
발달장애	40(4)	45(4)	-
자폐성 장애	20(2)	22(2)	-
지체장애, 뇌병변	10(1)	-	100(1)
지적장애	10(1)	11(1)	-
ADHD	10(1)	11(1)	-
기타(사회성 결여)	10(1)	11(1)	-

나. 보육 현황

우선 인터뷰를 진행함에 있어 각 이해관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보육 현황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하에서는 기관장,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담도록 하며 현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본 절의 보육 현황은 장애아 보육의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1) 기관장

가) 경계성 장애 판단 절차 부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적 문제점

특히 요즘 들어 경계선에 있는 아동들로 인하여 원장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이를 먼저 인지하고 대처할 경우 예후가 좋지만 본인 자녀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비장애 아동으로 입소를 원하는 경우 향후 진행 경과가 매우 안 좋게 판단됨으로서 아이의 일생에 있어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때 어린이집에서 개입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상당수 있기도 한데 이들에 대한 주먹구구식 지원으로는 전체 체계 안에서 장애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지원을 하기 힘들어 이에 대한 개선이 매우 요구되는 상황이다.

입소하기 전에 각 가정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검진에 ‘발달검사 및 추적을 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경우는 그나마 부모가 스스로 문제의식을 느끼고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먼저 호소하는 사례입니다.(중략)..... 장애통합이 아닌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에 교사 및 원장은 심사숙고 끝에 부모에게 자녀의 발달검사를 권해보기도 하지만 부모의 반응은 교사를 만나기 어려워하며 회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04)

장애에 대한 진단과 판단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어떤 장애까지 통합 시설에서 수용이 가능한지, 전문보육시설로 가야하는지, 특수학교로 가야하는지 부모의 선택에만 온전히 맡길 경우 장애아 보육과 통합 보육이 둘 다 제대로 실현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진단에 대한 정확한 근거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장애 유아의 통합 혹은 전문보육 시설에서의 보육서비스제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0)

2) 교사

가) 경계성 장애아 판단과 사후 대처의 어려움: 어린이집 전유형 공통

교사들은 대부분 비장애 아이와 장애 영유아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장애 발견 초기에는 학부모와 기관, 교사의 공동 역할이 중요한데 학부모의 경우 감정적인 판단으로 비장애 영유아로 구분되기를 원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진단 아닌데 비장애 아이들인데 경계선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장애 교사로서 제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일반교사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근처에 어린이집 복지관에 전화해서 연계하는 정도밖에는 안되더라고요. (01)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 생활을 하다보면 장애특성이 분명한 아동들 보다 아동의 기질이나 성향으로 인한 행동 및 습관인지, 장애특성인지 불분명한 어려움이 있어요..(05)

나) 장애 유아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순번 대기 시스템: 어린이집 유일

보육포털 대기 시스템에 의해 일괄적으로 배정받는 시스템의 개선을 요하고 있었다. 장애 진단 및 배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사가 3명의 아이를 보기 힘든 경우가 다반사로 지적되며 이는 보육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단 장애아이들도 보육포털에 의해서 대기 순대로 뽑게 되어 있잖아요. ..(중략).. 이 아이들이 정말 행동문제와 여러 가지 있는 자폐성향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 뇌병변에 보행이 안 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나란히 있을 때 그런 상황일 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06)

또한 전반적으로 장애아 보육의 가장 큰 어려움은 통합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수교사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장애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집 배치와 더불어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와의 협업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하겠다.

선생님은 어쨌거나 아이들 활동을 하려고 유도를 하는데 애하고 활동을 하면 나머지 아이들이 그니까 방치 아닌 방치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것들이 사실 교사입장에서는 가장 그 부분이 마음이 조금 어렵고.(04)

3) 학부모

가) 관련 정보의 부재

장애영유아 학부모가 느끼는 보육 현실은 정보의 공유가 되지 않는데서 오는 답답함에서 일차적으로 비롯되고 있었다. 이는 전달체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장애보육 전반의 문제를 포괄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희 아이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등록을 했어요... 제가 육아부담이 굉장히 컸었어요... 어린 동생이 있었고.. 어떻게 할지 상담을 처음에 받기가 힘들었고...유치원을 갈까 하다가 그냥 어린이집이 좀 더 아이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01)

특히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의 경우 학부모가 느끼는 보육현실의 격차는 정보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었는데 교육청과 복지부라는 이원화된 관리운영체제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관련 학부모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초기 장애진단부터 격차가 생기므로 향후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알음알음 엄마들을 통해 접할 수 있었고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산하 치료기관이 있다거나 신설되면 정보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 병설유치원에 다닐 경우 교육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제공 받은 적이 없다. (02)

나) 낙인의 우려로 인한 장애등록 거부

한편 장애아 보육의 현실에서 가장 힘든 것은 본인의 아이가 장애로 판정된 이후의 생활이다. 이는 사회적 고립감과 낙인의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등록을 한 경우 지원이 좀 더 뭍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설 치료를 받음으로서 경제적인 감당까지 한꺼번에 부모의 짐으로 떠 앉게 되는 현실을 볼 수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장애등록한다는게 쉬운 결정이 아니므로 보통 아이가 만 6세가 되기전(만6세이전까지는 장애등록없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바우처를 제공받을수 있다) 또는 취학전까지 장애 등록을 미루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05)

다) 복잡한 절차와 치료에 드는 고비용

장애를 위한 진료비용,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또한 심각하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비장애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기에 비용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는 정보 전달과 공유에 대한 미흡한 체계가 결국 이러한 고비용 구조를 양산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다.

보통 대학병원급 소아정신과는 접수에서 진료까지 최소 3개월, 또 검사접수까지 수개월이 걸렸고, 비용 또한 진료비와 검사비 합해서 40만원 정도였다.). 영유아의 경우 어릴수록 치료 효과가 좋은 점, 취학아동에 비해 시간적 자유로움, 진단에 따른 충격(?)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04)

또한 장애아동의 경우도 여러 가지 수업을 듣게 되는 데 지역사회의 도움 또한 비용 감소에 있어 주효하게 작용할 것을 알 수 있다.

동네에 흔히 보이는 종합복지관에서 피아노와 같은 간단한 수업은 장애아동을 위해서 오픈되었으면 좋겠다.(09)

동네 복지관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저렴한 편이지만 이 역시 사용에 있어 대기가 길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오픈은 되어 있으나 결국 대기를 기다리다가 치료시기를 놓치게 되므로 고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사설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파악된다.

라) 아이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한 동일한 지원 체계가 부재

한편 학부모는 '아이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에의 적응'을 최우선 보육의 목표로 삼고 있기에 그 장소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보다는 본인의 아이를 따뜻하게 키워주고 사회인으로 성장시켜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일단 30개월 정도에 등록을 해서 유치원을 갈까 어린이집을 갈까? 아니면 병원에서 운영하는 조기교실을 갈까 뭐 이런 것 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한 케이스거든요.. 일단 어린이집은 완전 통합이에요 그리고 병설유치원은 부분 통합이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비장애 아이들과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02)

제가 치료를 처음 시작했을 때 보다 지금 이제 조기치료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현재는 병설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더 많이 선호하기도 해요 왜냐
 면 다녀본 경험의 엄마들이 일부는 어린이집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있습니
 요..(03)

마) 입소대기 시스템 개선 필요: 장애유형별 배치 요구

학부모 입장에서 시급한 것은 장애 유형에 따른 입소로 현재 입소대기 시스
 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
 차를 초래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 본인의 자녀다 다른 어떠한 장애를 가진
 아이와 한 반이 되느냐에 따라 보육 환경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
 다.

장애아동도 대기 순번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지체 두 명에 발달장애
 한명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어요....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을 배치하는 것
 처럼 약간 보육 쪽에서도 아주 장애가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배치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현장에서의 너무 어려움인 것 같아요(04)

바) 사설(민간) 기관이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한 문제

대부분의 장애 유아들의 학부모들은 통합을 위해 기관을 이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이외 치료도 원하지만 기관에서 있는 시간 별도, 치료 받는 시간 별
 도로 움직여야만 하는 불편을 감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
 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과 사설 치료 기관을 병행한다.
 이에 해당 기관에서 아이에게 알맞은 적절한 치료를 병행한다면 훨씬 효율적으
 로 기관에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9명의 아이당 1명의 치료사를
 두게끔 되어 있으나 현실적인 급여체계,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다.

교실 분리보다는 감각통합 치료실과 같은 실내 놀이터를 만들어서 아이가 다양
 하게 자신의 신체를 사용해보는 기회를 일상에서 접하였으면 좋겠다. (07)

사) 나이가 아닌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른 기관 이용 필요

나이에 따른 배치보다는 신체 자조 기술이나 인지능력에 따라 기관에서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학부모들이 상당수 있었다. 현행 법에 의하면 1년의 취학
 유예를 허용하고 그 이후는 지원이 중단되므로 경제적인 부담, 학업에 대한 부

담, 그리고 향후 진로 설계에 대한 부담이 오로지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신적 장애는 경우에 따라 6-7세까지 대소변 가리기가 힘든 아동이 있다. 이런 아동이 동일 연령에 배치되면 친구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놀림거리가 될 수 있다. 언어적으로 표현은 어렵지만 장애아에게도 스트레스가 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일단 하위반에서 학습적인 것보다는 생활습관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 받으면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08)

아) 기관 수 부족과 교사 부족

기관에 다니고 싶어도 지리적 접근성상 기관 이용을 포기하는 장애영유아들이 많이 있고, 기관이 있다고 해도 그 기관에서 특수교사를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는 극소수인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에서 나아가 전반적인 장애영유아 보육 및 교육 시설이 현저히 작은 데서 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라 할 수 있다.

특수교사의 유아들을 교육 한다가 보다 보육에 급급한 실정이고 혼자서의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다. 발달장애 전담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뇌병변, 지적, 자폐성 유아들이 한 프로그램 안에서 교육 할 때 장애별 교수법도 확연히 달라져야 함에도...(08)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배치가 되지 않다보니 한 학급에 교사 1명이 3명의 자폐성 장애 아동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질높은 통합보육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배치도 고려해주었으면 합니다. (07)

4) 소결

기관장과 교사, 학부모를 인터뷰한 결과 어린이집 유형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장애 보육 현황의 문제점은 1) 물리적 환경의 열악함, 2) 교사의 부족이 주로 언급되었고 교사는 근무 환경의 열악함, 학부모는 장애관련 보육 교육 정보의 부재를 꼽았다. 주로 꼽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4〉 장애보육 현황 관련

구분	주요 문제점	대안 제시
기관장	장애유형별 입소관리 시스템 부재 경계성 장애 아이 다수 발견 장애판단과 시설입소 여부 판단 불명확	경계성 아이들 판정 프로세스 구축
교사	경계성 장애아동 조기발견 필요	
학부모	정보 공유 낙인 배제 치료지원 아동의 건강한 발달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치료지원 시스템 구축 사회적 인식 개선

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관계자 인터뷰 결과 해당 유형별 공통된 의견이 해당 유형에서 3건 이상 나온 항목을 제시한 것임.

다. 인적환경

본 파트는 교사 및 인력에 관한 현실적 문제를 살펴보는 부분으로 기관장, 교사, 학부모 모두 가장 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인 면접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기관장

가) 유아특수교사 채용의 현실적 어려움: 장애아전문과 장애아통합 동일 문제점으로 지적

유아특수교사를 어린이집에서 채용하는 것은 기관장 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유아특수교사가 아닌 장애영유아보육교사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그 1-2년도 아이에 그 신입교사가 진짜 없어요. 사회복지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선생님들이 이제 80시간 이주하고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따시는 경우도 있어서... (04)

나)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질적 차이

어린이집에서 유특교사를 채용하기 힘든 경우 장애영유아보육교사로 그 인력을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같았다. 같은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어도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차라리 현실적으로 육성하자는 의견과 처우를 개선해서라도 유특교사를 채용하여야만 한다는 의견이 나뉘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특교사가 장애 유아 보육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장애영유아보육교사와는 현재의 양성과정에서는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데 의견을 합치하였다. 어린이집 장애 유아의 교육적 측면을 위해서는 유특교사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특교사가 훨씬 정말 질적으로 필요해요 진짜 4년간 장애를 공부했기 때문에 (05)

처음은 다 미숙해요 유특교사라고 해도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맞춰서 배우고 오는데 아니라 교육부의 특수학교 상황에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굉장히 달라요...그러니까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일반 보육을 하다가 장애 쪽을 그래도 그냥 한사람이 더 낫다 애들 다루는 것도 낫고....(03)

이에 결국 처우개선만이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교사인력확보의 방법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 제가 여기 왔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너 어린이집에 왜가니 저희 인건비가 1,000만원 이상이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01)

다) 일원화되지 않은 자격증 체계

현재 어린이집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는 주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이고 특수(인정) 교사, 유아특수교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원장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근무, 그리고 안정된 교사 인력 수급이 우선시되는 입장에서 자격증에 대한 회의감을 보이고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 인정 교사와 보건복지부 인정 교사에 따른 자격증 형평성 차이를 지적하고 있었다.

장애아동에 대해서 너무나 잘알고 있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못됐어요. 입학은 했어요 특수교사 자격은 안취요 공부는 할 수 있는데 자격은 안취요 지금은 특수교사인정 자격으로 남아있어요(02)

라) 대학교 취업을 평가체계의 문제

현재 어린이집에 취업하는 경우 임용률에 가산이 안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마저 권장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교수가 보내고 싶어도 가장 근본적인거는 아니지만 임용률에 포함이 안되니까 이제 못 보내주겠다는거예요 올해부터 작년에(05)

마) 현장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실전 미흡

현장에 배치되고 있는 교사들은 장애아 보육시설에 실습조차 가지 않고 현장으로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아 보육에 대한 전문성 결여 문제가 도출되고 있었다. 자격증으로 인한 차별을 현장에서 만들기 이전에 교사 양성과정에서 이미 전제되어 있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교육보사가 저희가 봐도 이거는 국려지책이지 8과목만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특교사하고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요 8과목은 정말 사이버로 책 한번 하루만 읽을 수 있어요(01)

바) 전문가 및 보조인력 증원 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수급인력 차이가 나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치료사와 기타 보조 인력이 뒷받침되면 어린이집에서도 유아특수교사가 없더라도 인력적인 정량적인 측면에서는 수월하게 보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지자체별 수급에 있어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초래되고 있는 데 전국이 균등한 보육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국가가 장애아보육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치료사는 서울시를 지원을 하고 9명당 1명을 둘 수 있어요, 서울 자체 지원이고요, 전문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통합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먼저 했고, 인천시가 노력해서 따냈고, 용인시가 이번에 했고(01)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현재의 인력으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는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여도, 그리고 사례관리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업무의 특성상, 그리고 총량적 상황상 원장이나 교사가 이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이에 사회복지사나 관련 전문가를 법상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시에서 장애아동이 30명이 되면 6개월 한시로 사회복지를 전공한 가족지원 교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 때. 그래서 그 때 채용한 사회복지 선생님이 있었어요...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만두면서 없어졌죠. 유일하게 그 때 규정에 채용됐던...(05)

부모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여도, 참여도, 강사의 유능성, 비용 등의 문제로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수가 많다보니 참석도 많이 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편일 것입니다(원아 수 대비). 또한, 강사 선정 시, 일반부모교육 강사 보다는 장애아와 관련성 있는 강사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01)

한편 보조교사와 유아특수교사와는 또 달리 치료사 인력이 어린이집에 오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실적인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이었다. 대표적으로 보수체계, 그리고 경력 불인정의 사유로 치료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경력인정이 하나도 안되니까 수당도 없는 1호봉 부터니까 그러니까 안오죠, 안 오겠다 하더라고요, 복지관이나 치료실 특수교사도 마찬가지로 그 경력인정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06)

우리원 있는 친구는 병원에 있다가 당연히 병원 못 받았죠 경력. 그 다음에 8과목을 하긴 했지만 그냥 치료사로 등록을 해서 보건복지부 인증 특수교사자격증도 이제 안 받고. 그런데 본인은 이게 좋아서 했는데 워낙 좀 독특하게 부모님들의 만족도는 치료사가 있는 거가 없는 거보다 200% (03)

사) 교사대 아동비율의 비현실성

교사대 아동비율의 문제도 여전히 지적되고 있다. 1:3이라는 비율이 현실적으로 장애아 보육을 함에 있어 비현실적인 것이 그 이유이고, 이로서 보조인력 수급 난이 이어지고 교사의 소진을 부추기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보육교사(특수교사):아동 비율은 1:3으로 현실적으로 보육기관내 0세영아와 비율이 같으며 장애아동을 선별해서 뽕거나 입학사정회를 거치지 않고 선착순입소를 하는 상황에서는 손이 많이 가는 장애아동이 입소하는 것은 1:3이라는 비율이 무척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04)

아) 보육도우미 사용 시간 증대 필요

보조교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짧은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교사보다는 보육도우미를 차라리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었다. 보조교사를 사용하려면 시간을 늘리거나, 보조교사가 아니고 보육도우미가 수월하다면 이를 길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4시간 보조교사도 필요한 데도 있지만 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육 도우미를 만약에 보육 도우미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01)

4시간 보조교사를 할거나 보육도우미 6시간 할거나 조사했을 때 그때 거의 대부분이 다 보육도우미를 선택을 하셨다고 시간이 많으니깐 (03)

자) 교사 지원의 형평성 확보 필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통 애로사항

유아특수교사 수급과 관련하여 어린이집에 올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월급의 상향 조정은 무엇보다 신중함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보인다. 월급을 올려주더라도 기존에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의 경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수교사의 역량과 처우를 고려하여 임금을 인상하고자 하더라도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월급이 교육청에서 주는 수준만큼 주면 올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현장에 있는 보육교사들과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하는 일이 사실 서로 협력해서 다 같이 아이들 보는 건데 유아특수교사만 월급이 훨씬 높다라면 교사들 끼리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것 같아서...(01)

사립유치원 원장의 경우 역시 특수교사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었는데 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아닌 교사들 간의 화합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는 어린이집과 매우 큰 차별성을 가지는 부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아특수교사라도 일반 교사와 동일한 아이의 특성에 대한 학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수교사가 정말 특수하게 오면 본인도 어려움을 겪는데 이 어려움을 자기는 보조교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유아 발달단계를 모르고 이 교실에 있다면 당신은 계속 특수교사가 아닌 보조교사일 것이다. 본인의 실력과 유아의 발달을 바르게 알고 정리할 수 있어야 팀티칭이 이루어진다. (10)

하지만 사립유치원 원장의 경우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가장 큰 차이는 교사 질의 차이라고 보고 있었다. 하지만 유치원에 유아특수교사가 굳이 지원하는 이유를 교사들과는 달리 경력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어린이집은 보육이기 때문에 우리아이가 기능이 떨어져도 보육으로, 교육은 유치원보다는 덜 받지만 덜 받는 교육이 애에게는 더 맞는다고 받아들여시는 것 같다는 제가 그런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유아교육 전공하신 선생님이 어린이집 같까요, 유치원 같까요? 당연히 유치원 가요. (10)

2) 교사

가) 일반교사와의 팀워크 중요

일반 교사와 통합학급에서 근무하는 선생님 역시 혼자 모든 장애영유아의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일반 교사와의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장애영유아보육교사와 특수교사 모두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사실 아이들한테 고마운 부분이 사실 크고 일반 선생님한테 손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일반 선생님들도 가끔 현장학습을 나가도 문제거든요. 이 아이들을 데려 가면 하나 멀리 튀고 도망가면 이 아이 잡아와야 되는데 보행이 안 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사실 학급 안에서 교사가 아무리 돌이 있어도 비장애 아이들도 손이 많이 미치니까 (03)

한편, 일반 교사와 장애특수교사의 업무분담이 정확히 나뉘어지고 있지 않은 점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아뇨 다 같이 보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애매하죠. 전화상당은 나눠서 해요. 그 외의 모든 것은 같이한다고 보시면 되요. 그냥 우리 반은 통합 3명에 일반 27명이 아니라 우리 반은 30명이다. 그런데 둘 다 담임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11)

나) 보조 인력 지원 미흡: 어린이집 모든 유형 및 유치원과의 공통적 문제점 지적됨

특히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 지원인력에 대한 요구가 매우 컸는데 이는 근무 강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정신적인 소진과도 관련되어 아이들에게 연결

되는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큰 요인으로 보인다. 특수아동을 다룰 수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더라도 본인의 일을 경감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이 있으면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기에 훨씬 긍정적인 환경으로 보고 있었다.

지원인력 부분이 굉장히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저희 기관은 그래도 그나마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해주신 장애보육도우미 선생님이 계시긴 하거든요..(05)

통합아동을 좀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보조인력이면 좋는데 그런 분들이 없어요. (01)

다) 치료사 인력 지원 필요

치료사가 상주하는 어린이집은 생각보다 드물었다. 서울시의 경우 9명의 장애아가 재원 시 치료사 인력 1명을 지원해주므로 그나마 치료사 인력을 보유할 수 있으나 나머지 지역의 경우 법인 자체의 비용으로 산정되어 채용하기 이전에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치료사들은 3년제, 4년제 나온 치료사들이 2년제, 3년제 나온 유아교사보다 월급을 적게 받아요. 근데 저희는 치료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법인에서 그 차액을 지원해줘요. (04)

라) 월급 상향에 대한 요구: 처우 개선 중 가장 많은 부분 요구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경우 일반 교사보다 상당히 소진에 이르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간의 격차와도 연동되는데 장애아라는 동일한 대상을 다루고 교육함에도 단순히 자격의 차이만으로 월급이 상이한 것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교사보다 20여만원 더 받는 월급으로 보상되지 않는 현실을 말해주었다.

...보육교사도 같이 올려야 되는 거죠. 저는 그게 테이블을 아까 얘기했듯 3-5세 아동들은 의무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 있는 급여 테이블에 맞는 그 호봉 수에 맞게 이렇게 해주면 되고. (04)

마) 질적 수준 향상 필요

어린이집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경우 전문적이고 이론적인 학습이 반드시 병행될 필요성을 사립유치원 교사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사립유치원 교

사의 경우는 아무리 현장에서 오래 있는 교사라도 자격증을 가진 교사와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현장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론적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고 일부 교사의 경우 본인들 역시 이론에 대한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분명 현장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론적인 지식이 전혀 없으면 그것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06)

말 그대로 장애아영유보육교사는 장애아를 위한 보육교사거든요 그러니까 특수적인 것을 좀 알게 되지만 전문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과 보육의 차이도 있고... 내가 애를 키워봤으니까 이 정도도 못해 약간 이런 감이더라고요. (06)

바) 장애아 보육 자체의 어려움: 누구나 겪는 어려움

한편 어느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이던 장애아 보육 자체에 대해 일의 고달픔은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바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이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처우개선으로 인한 여건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기관에서 일하던 아이들을 보는 직업의 특성상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냥 일이 많다는 것. 내 시간이 없다는 것.(11)

사)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비현실적: 어린이집 공통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은 역시 보육을 함에 있어 아이들 관리가 잘 되지 못하는 이유로 한명의 교사가 장애아 3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장애아 기관 배치에 있어서의 문제점과도 연동되며 교사의 체력관리, 근무 환경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아) 전문직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과 상실감: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처우 관련 공통

또한 교사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체계와 근무환경 조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대체인력이나 보조 인력의 협력 관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아마 대부분의 특수교사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아직은 이제 시작은 아마 그냥 잠시 거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예요 그래서 예 경험이 긴 선생님이 많이... (03)

반면에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장애아 교육이라는 특성상 교사가 힘든 건 마찬가지였으나 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생활할 때 조금 더 움직여야하고 일과뿐만 아니라 해야 할 청소라던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버겁기는 한데... 할 만은 한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해져서 그런지...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어요(11)

3) 학부모

학부모들의 경우는 본인의 아이가 지낼 환경에서 교사의 질을 우선시 여기게 되므로 전문성, 그리고 교사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한편 본인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든, 유치원을 선택하든 교사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결국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아이의 교육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가) 유아특수교사 인력 부족

구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을 인터뷰한 결과 본인의 아이를 유아특수교사에게 맡겨 교육을 받도록 하고픈 욕구가 상당히 컸으나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었다.

현장은 어쨌든 올 사람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럼 그래서 그 결국에 피해는 우리 아이들한테 (01)

유아특수선생님이 어린이집으로 오면 좋는데... (02)

하지만 학부모들은 현실적인 수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자격증 유무보다 현장에서의 경력을 더 신뢰하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쌓아온 그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데... 유특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인정을 되지가 않는 거예요 (01)

그러니까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한다는 그걸로 자격증의 유무를 나눠버리면 더 열악한 환경에 누가 더 자격증을 가지고 오려고 하겠어요... 그거야 말로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죠... (03)

한편 본인들의 아이들 보육 환경 질 개선을 위해 학부모들도 교사의 처우 개선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4) 소결

교사 및 인력과 관련한 부분은 현재 장애영유아보육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 중 하나로 기관장, 교사, 학부모 모두 유아특수교사 인력 수급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다만 각 관점은 상이하었는데 기관장의 경우 현실적 운영의 어려움, 교사의 경우 처우, 학부모의 경우 전문적 교육이라는 각 입장을 위해 유특교사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교사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제대로 양성하자는 입장과 그래도 유특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맞서고 있었다.

〈표 III-2-5〉 교사 및 인력 관련

구분	주요 문제점	대안 제시
기관장	유특교사 배치의 어려움 보조인력과 치료사 인력 부족 교사대 아동비율 1:3은 너무 과도	유특교사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 어린이집과 유치원 격차 해소 치료사 인력 확보 위한 재정적 지원 필요 교사대 아동 비율 축소
교사	일반 교사와의 협업 시스템 필요 연수프로그램 부재, 협소 교사 질적 저하 월급이 낮음 소진의 문제 처우문제	팀어프로치 체계 구축 정서적, 이론적 정기적인 연수 필요 월급 상향 조정 교사지원
학부모	유아특수교사 인력 부족	장애아보육교사 증설 및 교육

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관계자 인터뷰 결과 공통된 의견이 해당 유형에서 3건 이상 나온 항목을 제시한 것임.

라. 물적 환경

1) 기관장

가) 시설의 열악함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기관장들에게 큰 사명감을 요구하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한편 시설의 열악함, 관련 규정의 미비, 장애아 보육 교실 면적의 절대적 협소함 등이 현재 장애아를 보육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는 장애 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모두가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이었다.

30명의 원아이므로, 보육실이 10개 있어야 하나, 현재 3학급씩 한 보육실에 있는 실정입니다(구법 적용). 그러나, 보육실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 보다는 보육실 면적이 너무나 협소하다는 문제점을 들고 싶습니다.(02)

2005년인가 이 영유아 보육법이 강화되가지고 그 전에 인가 받은 데는 지금도 여전히 장애아동이 8평이에요. 근데 특수학교는 장애아동이 몇 평 이죠 몇 평.. 왜냐면 교실 하나가 몇 십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01)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현 원에는 언어치료실과 강당을 통해 장애아동의 수업을 지원하지만 그 위에도 놀이치료, 감각통합, 음악치료등의 개별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04)

한편 장애아를 위한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실 크기 조차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매우 요원한 일로 파악되고 있었다. 또한 장애 유형별로 욕구와 필요 사항이 다르나 입학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인 어린이집 시스템은 교육과 보육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이 협소하다 보니,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처럼 장애유형을 정해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03)

편의시설로는 경사로, 계단폭, 엘리베이터, 점자블록등 이동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 및 자세유지를 위한 체어, 워킹을 돕는 워커, 휠체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

서확대경, 청각장애인의 청능훈련을 위한 청능훈련학습기, 언어장애아동을 위한 대체보완언어훈련기 등 다양한 기자재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02)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 입소하게 되는 경우 화장실이나 복도에 핸드레일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05)

나) 지역별 불균형한 인프라 구성

한편 물리적 시설의 낙후함 뿐 아니라 원장의 역량 여하에 따라 전반적인 관리의 질이 달라지고 접근성이 지역별로 불균형하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장애통합 어린이집은 국공립에서 위탁을 받으며 원장의 교육철학으로 취약보육을 결정하는 자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장애영유아의 거주지 근처에서 장애통합기관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06)

이를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애 전문 혹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경우 더욱 시설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다) 장애 통합 학급 증원 및 기관 수 증설

3세 반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가장 취약한 아이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사실 3세, 4세, 5세를 안정적으로 가기에는 부모님들은 다 아이들이 원하니까 이사를 가지 않는 한 이동 잘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어린반만 자리가 나오거의 대부분 중간은 가끔 나고(06)

2) 교사

가) 물리적 시설 면적 확보 부재

기관장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장애아 보육을 할 때 물리적 공간이 일반적으로 협소하다는 것이다. 민간 자본이 투입되거나 국가적 지원이 늘어나거나 법이 개정된다면 물리적 공간 자체를 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직접 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좁은 교실에서의 수업이 곧 체력 소진으로 다가오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데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지원 자체가 마땅치 않아 그대로 낙후한 환경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도 발견되었다.

일단 교실은 제가 알고 있는 반이 만 5세반이라 애들이 좀 등치도 크고 움직임들도 되게 많은 아이들이라 조금 좁은 감은 있어요. 교실 자체는.(05)

한 아이를 위해 화장실이나 복도에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08)

3) 학부모

가) 공간의 물리적 협소함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라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교실 및 관련 공간이 매우 협소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결국 보육의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아이들의 활동 반경을 좁힘으로서 발달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본 절에서는 물적 환경과 관련한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 기관장과 학부모, 교사 모두 절대적 공간에 대한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시설 보육의 질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I-2-6〉 물적환경 관련

구분	주요 문제점	대안 제시
기관장	보육시설 면적 협소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보 필요 지역별 인프라 비형형성 지원열악 학급증설	넓은 면적 확보 편의시설 구축 특수학교 지원 강화
교사	물리적 환경개선 필요	교실면적 상향조정
학부모	공간의 물리적 협소함	교실면적 상향조정

주: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관계자 인터뷰 결과 공통된 의견이 해당 유형에서 3건 이상 나온 항목을 제시한 것임.

아. 프로그램

1) 기관장

가) 프로그램 구성의 중앙 지원 필요: 주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의 요구 사항

현재 표준보육과정 하에 통합어린이집에서 장애아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 정도에 따른, 그리고 특성에 따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집 간에 형평성의 차이와 운영가능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기관장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기준을 국가가 마련해주길 바라고 있다.

현재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제로 이걸 누가해야 하나면 장애아동 지원센터에서 해야 되요.(03)

나) 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원 부재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통합어린이집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이 또한 원장의 열의가 수반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이 관련 지원이 없기 때문에 파악된다. 이러한 가족지원프로그램은 1) 부모 지원, 2) 형제자매 지원으로 구분되는 데 장애아가 있는 가족의 경우 주변사람들의 고통과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해 함께 자조집단적 차원에서, 그리고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애영유아의 가족은 장애를 직접 겪고 있지는 않지만 더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가정의 가장 문제는 너무 과잉으로 씩씩한 척 한다거나, 아까 그 분들처럼 그런 가정이 있고요. 아니면 너무 가라앉아 있거나.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부모님들도 많으세요. .(02)

다) 유치원과 동등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필요

사립유치원 원장은 물론이고 어린이집 원장조차 아이의 입장에서 받는 교육 프로그램은 유치원이 더 낫다고 보고 있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인정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도 현실적인 지원인력 측면, 전문화 측면에서 어린이집은 유치원보다 상대적으로 보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유로 여기가 적절합니다 아닙니다 라고 해주시면 그런 다음에 교육은 저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그 친구를 보고 저희가 월 준비해야 되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아이를 보자 했었거든요 (11)

라) 교사들의 직무교육 프로그램 필요

관련해서는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우리가 장애는 아니지만 장애전문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딸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 과목 이수하면 하다못해 통합어린이집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 한다면 그 그러한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조금 체계적으로 한 것을 실질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아니면 이걸로 직무교육을 대체 한다면 약간의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01)

마) 초등 연계 프로그램 미흡

현재 초등학교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어린이집 자체적인 역량으로 이를 진행하기엔 역부족이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대부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므로 부모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 장애영유아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 여쭙어보면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학교에 가면 모든 것이 긴장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자녀의 문제행동과 권위적인 시스템에 어떻게 아이를 또는 부모가 적응을 해야 할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며 어려움이라고 토로합니다. (04)

2) 교사

가) 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많은 교사들이 인지하기를 장애영유아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국 장애아보육의 최종 목표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사립유치원 통합학급의 경우 장애아보육과 교육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지만 완전 통합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모방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일단 분리가 안 되니까. 아이들 자존감도 그렇고. 더 높은 것을 보면 볼수록 잘 따라가더라고요. 월 하더라도. 그런데 특수학교는 사실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11)

나) 부모의 참여 중요성과 부모교육프로그램 필요성

장애아 보육과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 아이, 학부모의 협동이다. 이를 위해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부모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많았다.

좋은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되도록이면 육종선에 계신 특수교사 선생님이 저희 원장님하고 논의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저희 여기 에서는.(04)

부모님들의 신청을 받고 교육이 꼭 필요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참여를 조금 하고 있어요. (02)

부모 교육을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 상반기에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반기 진행이 되고 .. 아버님 어머님 다 오셔서 하는 그 교육이 또 필요해서 이렇게 요구를 파악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03)

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 개발 필요

결국 어린이집들 간의 격차 해소, 그리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간의 격차해소는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으로 귀결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육아종합지원

센터의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각 원의 통합 어린이집에 계시는 원장님들하고도 어쨌든 저희 원장님들과 네트워킹으로 되어있어서 일단 보육통합통계서도 알려드리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신청해서 참여하시는 편이긴 해요.(07)

그런 것들은 원에서도 힘들고 이런 어려움들을 원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사실 원장님 입장에서 해결해주실 수 있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그런 네트워크들이 잘되어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08)

라) 장애아이별 개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질적 향상

사립유치원 유특교사는 어린이집과의 비교를 질적 차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의 발달 상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7세 2학기 때는 학교 가기 직전에 필요한 것들을 IP로 하기 때문에 문제행동 같은 거 잡아주는 것을 하기 때문에...(11)

마) 교사지원프로그램 필요

교사들의 경우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바에 따라 더욱 교육을 심화하여 받고 싶어도 여력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지원은 정서적 지원과 학습적 지원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성취를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슨 협의회 이런데서 그런 교육이 있으면 되도록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일회성 적인 게 좀 많기는 해요. 저희는 현장 안에서 일하는 교사입장에서 심화 과정을 좀 원하는데... (03)

선생님들의 이런 어떤 마음도 보듬어 주면서 멘토처럼 그렇게 해주는 교육도 필요한 거 같아요. (04)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 모두 요구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 자체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은 탓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3) 학부모

가) 완전 통합 프로그램 요구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통합적 상황을 추구하기 위해 보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자녀가 받는 것보다 비장애 아이들과 무리 없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꼽았다.

어린이집에 가는 거는 경제적인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들과 완전 통합으로 같이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바깥에서 배웠던 기술을 쓸 수 있는. 실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데 그게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따 꼬 프로그램은 그냥 그렇게 유연성이 별로 없어요... (중략) ... 일반 선생님들도 저희아이들을 옆에서 완전통합으로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특수 선생님보다도 다른 곳에 치료사보다도 일반 선생님도 이해도가 높으세요. (02)

따라서 무엇보다 어린이집 선호 이유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아닌 완전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대일이에요 물론 뭐 통합 상황의 환경에 아이가 놓여진 것도 중요하지만 일대일로 아이를 계속 봐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좋은데에 있어도 방치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03)

나) 어린이집의 특징점: 생활습관 형성은 유치원보다 장점으로 꼽음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보육에 초점을 두었기에 생활습관 형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따라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보다 학부모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생활습관 형성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그 생활습관인데.. 생활습관은 보육이랑 연결이 되자나요 근데 유치원에서는 그 부분을 교육으로 초점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04)

다) 유연한 운영시간과 방과 후 프로그램 필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장애 유아 학부모들은 본인의 생활보다는 아이의 생활에 하루 일과를 맞추기 때문에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오히려 힘든 사람들이다. 하지만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늦은 시간까지 특수교사가 남아서 아이를 봐주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어린이집에 아침에 8시반에 남편이 맡기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하원시간을 퇴근시간에 맞춰서 찾아요 5시반에서 제가 굉장히 피곤하면 6시 이렇게 상태에서 찾아오는데... (05)

일하는 학부모의 경우 종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지만 눈치를 보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는 분위기를 바꾸지 않는 한 힘들 것이라는 체념이 앞서 있었다.

라) 치료 프로그램 미흡

한편, 사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에서는 치료가 안되기 때문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민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치료비용은 월 60부터 월 500까지 천차만별이었고 소득수준에 의해 치료의 강도와 빈도가 상이했다.

10시 반에 갔다가 저희아이는 12시 40분에 도착하고요 한시 반에도. 그런데 거의 점심시간으로 치료를 잡은 게 그때밖에 치료가 안 돼요. ...어떻게 간신히 제비뽑기해서 뭐 복지관에서 15000원 회당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비는 한60정도... (02)

이는 국가가 치료를 보장하지 않음에 따라 순전히 가구 소득에 따라 치료 시간이나 질 등에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직은 ABA 3시간 놀이치료 하나 그다음에 그룹 2개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평균적으로 비용이 350만 원 정도 들어요. (04)

결국 사적인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은 어린이집에서 수요가 충족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었다.

마) 가족지원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지 필요

가족지원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절실했다. 장애 유아 학부모들의 경우 특성상 자조집단 형성이 힘들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를 위한 중앙 프로그램의 부재는 장애 유아 뿐 아니라 가족의 해체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는 또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말한다.

오히려 저는 다른데서 한 번도 부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가 심리치로나 이런 걸 받아 본 적은 없고 ... (중략) ... 어린이집에서 해주는 프로그램은 부모입장에 서는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기 때문에 참여도가 되게 높아요. (06)

바)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필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의 질적 차이였다. 이는 지역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일관된 매뉴얼의 부재, 연계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연계프로그램도 필요해보였다.

그 성년후견인 제도에서 복지관에서 2주에 한번 씩 해주고 계시거든요 . 근데 참여율이 정말 높아요. 공부해야 될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더 멀리 볼 수 있게끔 근데 그걸 어린이집에서 해주고 있어요.. 원래는 국가적으로 해주어야 되는 건데 어린이집에서 (07)

4) 소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관장, 원장, 학부모는 1) 가족지원프로그램 필요, 2) 치료 프로그램 제공 필요를 모두 중요하다고 보았고, 기관장의 경우는 특히 중앙에서의 지원 부재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2-7〉 프로그램 관련 주요 문제점과 대안

구분	주요 문제점	대안 제시
기관장	가족지원프로그램 지원 부재 중앙과 지역사회, 어린이집간 연계 부재 초등 연계 프로그램 필요 프로그램 운영할 전문가 부재	가족프로그램 활성화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인력 지원
교사	완전 통합이 힘든 열악한 처우 가족 지원프로그램 개설 필요 치료 프로그램 지원 필요	완전 통합을 추구하기 위한 환경 조성 위해 교사 추가 지원
학부모	정서적 지지를 수반한 가족 지원프로그램 부재 통합을 위한 환경 확보 프로그램보다는 질 높은 일대일 보육 필요	어린이집 자체가 아닌 중앙에서 매뉴얼화 된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바. 재정 및 제도적 지원

1) 기관장

가) 현금 지원 필요 영역: 치료사 근무환경비, 교구비, 원장 수당 등

기관장의 경우 가장 민감한 영역으로 국가에서의 지원으로 보육 혹은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공립과의 비교선상에서 현금 지원에 대한 부족함을 토로하였고, 어린이집에 과도한 지원이 교육으로 연결되지 않고 장애아 보육과 교육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우리 활동보조원을 지원해줘도 뭐 지원해줘도 100만원도 안주는 입장이라.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는 공익도 있고 굉장히 지원인력이 많더라고요. 112명의 공립은 18명의 교사 지원을 수용시키고 있더라고요. 국가의 모든 세금이 거기로 다 가는 것 같아요.(11)

어린이집의 경우 역시 장애 유아 지원에 현금 혹은 서비스 지원이 모두 협소하고 부족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는데 현장학습비, 치료비, 교구비, 치료사 근무환경비,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원장 수당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였다.

현재 부천시의 경우, 장애 유아만을 위한 지원현황은 전무후무하다 봅니다. 장애아보조교사 파견 정도가 다이고, 교재교구 지원의 경우도 일반어린이집에 준하고, 그 또한 다른 어린이집과 같은 비율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사항 없다 봅니다. 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구합니다.(02)

나) 장애아에게 추가적 지원 필요: 어린이집 유형 불문 공통된 불만사항 및 요구

현재 장애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좀 더 높은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누리과정 도입으로 인하여 다른 아동들도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 만이 특별히 보육료를 지원받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약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부모들이 굳이 장애등록을 하거나 하지 않아 장애아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었다. 또한 보육료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더 요구하였다.

부모님들이 전에는 장애아동을 보육료 지원이 되고 비장애 아동은 지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면 장애로 그래도 전환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똑 같아요. (02)

다) 지원 시설 증개축 지원 필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 관련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많은데 이는 시설을 증개축할 비용이 부족한 데에서 오는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장애유형별로 편의시설의 종류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의무 사항 또는 권고 사항은 현실을 모르고 법상의 규제에만 매몰된 현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보통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이 정말 시설이 필요한, 휠체어 타고 다니거나 이런 친구들 보다는 발달적인 친구들이 들고 뛰는 아이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방해되는 아이들도 많아요. (04)

라) 특수보육과 일반보육의 분리 지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경우 일괄적인 입소대기시스템에 의한 아동 입소, 그리고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특수 아동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없음에 따른 불만 등이 대다수였다. 이는 지원체계를 이원화하자는 요구와 맞닿아 있다.

2) 교사

가) 특수교사 수당 상향 조정

현재 20만원 수당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교사들의 생각이었다. 20만원 더 받고 일은 그에 상응하는 것보다 더욱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장애아 보육의 현실을 반영한다.

근데 사실 그게 20만 원을 더 수당으로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돈을 주실 때 사실 그냥 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 내가 20만 원 더 받고 이 일을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이 길에서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01)

나)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전문가 인건비 지원 필요

당연히 보육도우미도 필요하지만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합하여 아우를 수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가능한 인력에 대한 현금 지원을 요구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인력 문제와도 연동되는 부분으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의

미한다.

이 선생님이 전반적인 부모님들의 심리적인 접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들 그리고 관련된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가족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비장애 가족들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장애가족들은 사실 조금 더 다르게 보거든요. 그런 문제와 관련된 거를 어쨌든 그 선생님께서 커버가 됐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의 부담은 조금 들었어요. (03)

다) 소득별로 차등화 된 치료 지원 필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들의 대부분은 사설 교육을 받고 있다. 이는 곧 사설 기관에서의 치료를 의미하는데 소득별로 이에 대한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어린이집의 환경까지 개선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

복지관에서의 치료는 가격은 저렴한 대신 대기가 길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으나 사설 기관에서의 치료는 바우처를 사용하더라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요새는 바우처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내가 경제적인 능력이 되면 개별 사설 치료 시설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회당 얼마 아이 앞으로 뭐 그 기간은 백만 원 이 백만 원 갖다 쓰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려우신 거죠. 그러면 복지관 서비스는 그거에 비해 가격대가 낮으니깐 받지만 대기가 많은 거예요. (05)

3) 학부모

가) 치료비 지원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치료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덜어주는 것이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기에 개입하여 효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치료에 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에서 포괄되지 않는 여러 영역들이 있기에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다.

애네는 발달장애아이들 진료비 검사비만 해도 100만원이에요 그런 부분은 의료보험(건강보험) 안 돼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려서부터 치료를 해줘야... (01)

나) 시간연장 인력 제공 등 일·가정 양립 병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장애영유아의 학부모의 경우 아이를 그 누구보다 안심하고 맡기고 일도 병행

하여야 하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시간연장교사의 경우 장애아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맡기고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력투입이 되도 우리아이들은 1대1 이어야 되요 1대3도 굉장히 버겁고... 근데 시간 연장을 하게 되면 보육교사 한분이 그 많은 아이들 속에 우리아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을 가진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04)

이와 더불어 학부모들은 교사 및 인력 지원체계에 있어서 1:3의 비율도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4) 소결

기관장의 경우 본인의 기관 운영에 따르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싶어 하고, 교사의 경우는 본인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과 아이들이 현실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지원으로 치료비를 언급하였다. 학부모는 장애아동의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의지하여 치료도 받고 본인이 일도 할 수 있는 환경의 실현을 중점적으로 언급하였다.

〈표 III-2-8〉 현금 및 서비스 지원 관련

구분	필요 사항	대안 제시
기관장	치료사 근무환경비 교재교구비 원장 수당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 증개축 비용 지원	특수보육과 일반보육 분리하여 지원체계 마련
교사	특수교사 수당상향 조정 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 치료 지원	전문가 인력 지원으로 교사 부담 경감
학부모	치료비 지원 시간연장 보육 등 지원 필요	치료비 지원 확대 (건강보험 영역)

사. 기관 운영 전반

본 절에서는 기관장과 교사의 의견을 서술한다. 운영과 관련 하여는 보육 현

황과는 달리 실제 운영적 측면에서의 현실 문제를 다루도록 한다.

1) 기관장

가) 시간연장 보육의 어려움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의 입장과 달리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운영 시간을 무제한 늘릴 수만은 없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이는 교사의 소진, 부담,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교사 인력 지원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로 보인다.

오래있으면 있을수록 아이들도 괴로워서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부모님들은 전혀 그냥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너네가 맡아 책임져야지 나 못해 이렇게 하시고 늦게 까지 시간 연장까지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02)

나) 지역적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운영 형태: 장애아전문과 장애아통합 공통 문제점으로 지적

기관장 인터뷰를 통해 지역적인 불균형 현상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강남권 어린이집의 경우 오랜 경험과 더불어 학부모들의 의식수준, 경제적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점을 운영에 있어 편리함으로 꼽았지만 다른 지역의 상대적 열악함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는 결국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효과가 달성됨에도 연관성이 있었다.

지금 서울시에 3반이 있는 곳이 딱 30%예요 나머지 60%로는 한반에서 두반이니까 부모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안가죠 그리고 여기 강남구는 부모교육 교사교육을 전체적으로 여기 가족지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양쪽이 서로 조율이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거죠 (03)

다) 원장이 장애 의심 아동에 대한 장애 진단 및 배치 등을 추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음: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공통 의견

일률적으로 대기 순번으로 배치가 되고 비장애 아동으로 등록을 하고 대기를 기다려도 원장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기에 일단 약간의 장애가 있는 걸 부모와 교사 모두 인지하고 있어도 일반 학급으로 들어와 결국은 장애아가 초과되는 상황도 대다수라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아이들을 선별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는데 이 역시 충분한 시스템은 아니었다.

근데 분명히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반으로 버티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우리아이는 늦은 거다 받아드리기 싫으신 거죠... 실제 그 반은 장애 아이들이 더 많은 거죠. (01)

가장 큰 선별기준은 장애유형을 고루 분포해서 받아요. 왜냐하면 교사도 지치잖아요. 워 보행이 어려우면 보행은 되지만 어떤 전반적인 발달 지체에 문제가 있는. 유형을 고루 분포해서 받을 뿐이에요. (10)

2) 교사

가)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모두 어린이집의 열악한 처우

특수교사의 경우 개인적 결심으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을 돌보고 싶어 지원했지만 특수교사 자체가 흔치 않은 어린이집 환경의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특수교사 자격증이 없는 이유로 전문성을 의심받는 경력 많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역시 어린이집에서의 교사 생활이 편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격증을 못 받는 부분이 속상은 했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선택한 부분에 후회하지는 않거든요 (04)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일은 많고 그에 비해서 월급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05)

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처우 격차와 어린이집의 경우 전문성 격하

유아특수교사의 경우 어린이집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보수였다.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을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에서 더 잘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유아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경우도 본인이 사학연금 대상자라는 것,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다.

페이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알기론 2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취업을 하더라도 어린이집 가느니 센터를 가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네 시까지 아이들이 있으면 낮잠시간도 있고 뭐도 있고 해야 하니까. 그러면 약간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어요. (10)

사립 유치원도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린이집에 비해서는 좋은 쪽으로 알고 있고.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욕심나는 부분이 적더라고요. (11)

올해에 갓 졸업한 친구하나가 유특 친구가 기간제로 학교에 근무를 했었어요. 1년을... 그러다가 우리 어린이집에 왔는데, 일주일 정도 근무하더니 갈등을 막 겪기 시작하더니 한 달 만에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07)

4) 소결

전반적인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기관장 입장에서는 운영비용 상의 문제, 교사 수급의 문제,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를 꼽았고, 교사의 경우 어린이집에서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였다. 또한 기관장의 경우 무상보육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장애 유아에게 역차별적인 요소를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표 III-2-9〉 기관 운영 관련 느끼는 문제점

구분	내용
기관장	운영비용 문제 장애 유아 입소대기 시스템
교사	유아특수교사가 어린이집에 입사하기 힘든 근로 환경

주: 유아특수학교의 경우 지원적인 측면을 언급하였으나 앞 절과 중복되어 별도로 신지 않았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공통된 의견으로 유아특수교사 수급의 어려움을 지적하였기에 본 표와 같이 구분을 짓지 않음

아. 전달체계

본 절은 기관장과 원장, 학부모 인터뷰 이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관장

가) 중앙차원의 장애인 전담 센터 전국적 설치 필요

기관장의 경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 교육부 소속의 특

수교육센터 등을 통합하여 중앙 차원의 발달장애센터와 지역별 센터를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분절된 서비스의 원인은 장애인 지원센터가 중앙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데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장애 아동지원센터 또 만들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또 만들고 특수교육 지원센터 또 있고 나는 이런 것들을 통합해야한다고 봐요. 지금 부모들이 특수 교육센터에 가서 상담하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에 배정을 해요. 특수교육센터에서는 장애 전문 어린이집으로 배치를 안 해요. (01)

나)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연계 부재

현재 지역사회연계가 간헐적으로, 각 지역의 역량에 맞게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관들이 느끼는 정책적 효과가 체감도는 매우 낮았다.

장애아동지원센터란 중앙에만 존재하는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생각입니다. 전혀 연계 없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조력조차 해주지 못하는 실정이구요, (04)

지역마다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관의 연계를 통해 장애아동의 개별화된 발달지원이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최근들어 무척 반갑고 이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06)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서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분명하고 지속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아동의 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매개체가 되는 곳이 있었으면 합니다. (05)

또한 기관장의 경우 대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언급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성이 낮다고 보므로 별도의 통합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2) 교사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교사들은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이 곳에서 지원인력 관리, 사업 프로그램 관리 등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장애 유아 상담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관성 있는 장애아 보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게 선생님도 그만두시면서 이게 사업이 중단되거나 또 일회성에 또 그쳐버리

거나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 딱 전문적으로 이런 것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육종지에서 한 분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이 계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거 같다.(05)

나) 민간, 국공립, 가정 등 장애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간 연계 부재

어린이집간의 연계는 어린이집 간의 질적 차이를 완화하고 교사들의 입장에서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아이들 간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가족 지원에 대한 기대도 이를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는 지역사회 연계와 연결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수교사 분들이 한분씩 배치가 되어있는데 그 선생님들도 보면 사실 소수잖아요. 특수교육이라는 특수보육과 관련돼서 연계했을 때 소수인데다가 역할이 굉장히 많은 거죠 (01)

다) 원스탑 지원시스템 필요

현재 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사회, 가정, 병원 등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학부모의 정보력과 소득에 따라 장애아 보육의 질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에서 관리가 가능한 원스탑 지원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장애아동부모들이 어릴 때 조기교육 및 통합을 통해 지원받고 문제행동에 대한 빠른 해결책을 찾고자 하더라도 행정적인 부분에서 국가적인 시스템과 지원체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결국 정보를 누가 갖고 있고 얼마나 발품을 팔았느냐에 따라 자녀를 양육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욱 체계적인 국가지원시스템과 One-Stop Service를 빠른 시간 내에 정착시키는 것이...(04)

3) 학부모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학부모가 가장 쉽게 접근하는 곳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중심에 있고 여기서의 정보 전달은 향후 장애아 보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후 계획 수립이 연계가 되지 않음에 따라 초기 장애의 발견부터 검사, 향후 계획까지 일관성 있게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 아이는 집앞이 육아지원센터가 없었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상황도 아니고 집 앞에 육아지원센터가 없었다면... 그 특수선생님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말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그 집 앞에 육아지원센터를 안 갔다면 애를 어떻게 발견했을 것이며... 근데 육아지원센터는 그냥 육아지원센터일 뿐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약간 다른 아이라는 걸 안 이후에는 그다음부터는 도움 받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02)

지역 사회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증설에 대한 요구가 있고 연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컨트롤기구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육센터, 복지관 등 여러 곳에서 유사한 일을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체감할 수 있는 정도가 매우 낮았다. 이는 분절된 서비스를 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발달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 복지관에서 하는 역할이 모두 다 비스무리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정보를 모으는 거나 선택은 엄마의 역할이 되어버리더라고요. (03)

오히려 많은 지원체계 및 인력은 분산되어 있고 학부모로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4)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자

본 연구에서는 기관장과 교사, 학부모가 공통으로 지적한 전달체계의 역량강화 중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애아 보육 지원 현황, 역할,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센터장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각 지역별로 고루 집단을 형성하였고,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도 함께 살펴본다.

가) 센터 역할과 기능

인터뷰 대상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으로 약칭)는 대부분 취학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북부 육아종의 경우 장애통합, 장애지원 프로그램 중 4년째 하고 있는 학교 취학 전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 이 프로그램은 11-12월 중 특수 초등학교 선생님들, 일반학교 특수학급 초청해서 부모 교육을 진행한다. 모든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에도 홍보하여 관심있는 사람들 모집을 한다.

이천에서는 역량 부족으로 장애를 특수하게 다루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다만 보육진흥원의 취약보육컨설팅을 가져와서 선생님 교육을 진행하는 정도로 장애아보육에 대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장애아보육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그 부모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서울 중랑구에서는 ‘효도데이’를 마련하여 어머니들끼리 집단상담 시간을 제공하였으나 집단 간 연대가 미미하여 그 효과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부모 교육(장애아통합어린이집 다니는 부모 대상 2월 당 1회), 교사 교육(1월당 1회), 치료사 지원,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당 주 1회 치료사 파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특수교사가 언어치료 자격이 있어서 치료실에 가지 않아도 자유 놀이하면서 센터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전문가 교수들을 초빙하여 연간계획을 함께 짜고 수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초등전이 프로그램 지원으로 초등학교를 직접 가보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는 부모 대상, 영유아대상을 별개로 시행하고 며칠동안 장기적으로 진행하여 통합어린이집 다니는 모든 아이들이 해당 교육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시행하고 있다.

가족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가족나들이 사업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상하반기 시행하고 아버님 어머니가 특히 만족도 높은 사업이다. 형제 자매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가족 간 이해와 협력을 도모한다.

한편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했다가 포기한 입소대기신청 사업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들어가기 힘든 것 의견 반영해서 특수교사 순회를 통해 입소대기자 관리를 육아종이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실패한 사업으로 남았다.

나) 현재 장애아 보육의 가장 큰 문제점

(1) 어린이집 역량 증진: 통합어린이집의 역량이 그리 커 보이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고, 장애보육 프로그램이 누리과정같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전담 예산 확보: 한편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과 관련한 문제점은 특수교사를 채용하여 컨설팅을 하고 기관과 연계해 줄 예산도, 인력도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한편 센터에 치료실이 마련되어 있으면 장애아 보육을 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모든 센터에 활성화될 여지가 보이

지는 않았다. 특히 지자체 역량 따라 지원체계가 달라지는 현상 바뀌어야 중앙에서 원스탑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3) 정책사업 수행 필요: 또한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정책성 사업이 아닌 예산 사업으로 단발성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를 가진다.

(4) 통합대체교사 지원 필요: (장애) 통합대체교사 지원도 절실하다. 대체교사 활성화로 예산은 많이 잡혀 있으나 장애의 경우 지원자가 없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5) 상담체계를 육아종이 중심이 되어 운영하여야 할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장애아 부모를 위한 가이드북을 공식화해서 중앙에서 배포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6) 장애 유아 경계선 예방 프로그램 필요: 통합이라던지 장애전문이라던지 장애 유아로 분류된 아이들이 아닌 일반 어린이집에서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을 선별할 수 있는 역할을 육아종이 해야 하는데 이는 곧 특수교사 지원을 통한 센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전제로 한다.

〈표 III-2-10〉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취약점과 향후 개선방안

구분	프로그램	지역사회연계
취약점	상담메뉴얼 부재 전문성 결여 특수교사 부재 예산 부재	어린이집 간 정보공유 취약
향후 개선방안	담당 예산 지원으로 센터 기능 강화	각 어린이집 컨설팅 사업, 자조집단 형성

5) 소결

동 절에서는 전달체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기관장, 교사, 학부모 공통으로 원스탑시스템 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를 우선순위로 꼽고 있었다.

〈표 III-2-11〉 전달체계 관련

구분	필요 사항	대안 제시
기관장	중앙 컨트롤 타워 부재 지역사회 연계 부재	중앙에 장애보육을 전담하는 기구 신설 혹은 육아종합센터 전문성 강화
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역량 강화 필요 어린이집 간 연계 부재 원스탑 지원시스템 부재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학부모	입소대기 시스템 불충분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혹은 원스탑지원시스템 구축

자. 기타

1) 기관장

그 이외에 기관장을 대상으로 장애영유아 보육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인터뷰한 결과 기관장은 유아 특수교사, 4년제 특수교사가 어린이집에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았다.

또한 아동학대문제에 있어 비장애아와 장애아의 차별성을 인지하고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을 언급하였고 교사 배치에 있어 장애 육구별로 교사를 배치하고 1:3 이라는 형식적인 비율에만 얽매이는 것음 비효율적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 이외에도 평가인증체계 개선으로 단순히 인증, 미인증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질적 평가를 시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2) 교사

교사의 경우는 일반 교사와 장애교사의 팀티칭을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도 현재 난립하고 있는 관련 자격의 체계적 정리와 그에 따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현재 특수인증보육교사는 특수교사에 들어가 있고 장애영유아보육교사는 보육교사에 들어가 있는 문제점을 가장 크게 지적하였다.

교사들 역시 기관장과 마찬가지로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들은 별도의 아동학대 지침 내지는 매뉴얼에 대한 요구가 컸고 경계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

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최초 개입을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는 결국 영유아 진단이후 어린이집 까지 연계될 수 있는 검진시스템을 요한다.

한편 방과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은 장애아의 발달 측면에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어린이집은 보육 기관이고, 이러한 보육 기관에서 초등학교 내지는 여타의 특수학교에 적어 있는 아이들을 방과후에 케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취사가 지원이 되면 장애아 특성상 식단 구성을 아이의 건강에 맞게 다양화하거나 식이조절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매뉴얼화 할 것을 요하고 있었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유아특수학교, 사립유치원을 각 1-2사례씩 선정하여 기관 방문 후 기관의 특장점을 소개하고, 기관장과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집단 면접과 심층인터뷰를 시행하여 현재 장애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현황과 전반적인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을 알아보았다.

우선 주요 사례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법인의 지원으로 특수교사의 안정적 고용, 숲유치원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이 특징적이었으나 여전히 부족한 인력 지원체계, 특수보육이 특수 교육과 같이 인정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 등을 문제로 삼았다. 둘째, M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족지원프로그램에 우수성이 있으나 유아특수교사를 모집하기 힘든 어려움, 장애아동을 대하는 교사의 일반적 어려움 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들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B유아특수학교의 경우 주로 중증 장애아들이 재원하는 곳으로 교육청 소관이었으나 어린이집과 비교하였을 때 시스템 운영이 잘 되고 있었고 교사들이 안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S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 특유의 어려움과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놀이평가를 통해 통합학급에 융화될 수 있는 아이를 선별하여 입학한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유아특수교사의 경우 유치원이기에 안정적 수급이 가능했다.

다음으로 관계가 인터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관장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현황, 프로그램, 교사 및 인력, 서비스 지원, 전달체계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가 거의 유사하였는데 1) 특수교사 부족, 2)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3) 치료비, 치료사 등 지원 미비, 4) 전문화되지 않은 프로그램, 5) 지원 전달체계에 있어 중앙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주요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1)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으로 특수교사 확보, 2) 어린이집 질 향상을 위한 현금 및 서비스 지원, 3) 중앙 전달체계 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IV.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안

본 연구에서 수행되었던 장애 유아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기관장, 교사, 학부모 면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전달체계의 센터장 면접, 우수 사례기관 방문을 통한 관찰 및 면담,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내용을 토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향 및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중단기 방안과 장기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향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 방향은 6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첫째, 장애영유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서 전국 단위의 장애영유아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둘째, 장애 유아로 진단되고 배치되는 과정과 관련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셋째, 장애 유아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는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인적환경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넷째, 장애 유아가 속해 있는 기관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 개선 방향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다섯째, 장애 유아를 포함한 형제와 부모 등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장애 유아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제안하였던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체계와 관련된 6가지 개선 방향을 <그림 IV-1-1>에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IV-1-1]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향

가. 전국 단위의 장애 영유아 실태조사

현재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 유아 현황에 관하여 정확한 통계로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 수치에는 0-2세 장애 영아와 입학유예아동도 포함되어 있고, 연령별로 어린이집 배치 유아의 수가 명확하게 제시된 통계 자료가 없어 정확한 장애 유아 인원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 검진체계가 어린이집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치료기관 등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 장애 유아의 서비스 이용 현황과 지원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부재한 실정이다. 효과적인 장애 유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장애 유아 뿐 아니라 장애영아 및 초등학교 입학유예아동, 초등학교 아동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장애 영유아 실태조사를 통하여 장애 영유아 현황 파악 뿐 아니라 교사 배치 현황,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인적환경, 물적환경, 프로그램 실시 현황, 치료지원서비스 종류, 전달체계와의 연계 등에 관한 정보와 내용 등에 관한 파악도 필요하다. 전국단위의 실태조사를 통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기반을 두어 정책방안이 마련될 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은 물론 효과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장애 유아 진단 및 배치 관련 개선 방향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진단 및 배치는 현재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가 고려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 이용 장애 유아의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장애를 판정하고 배치하는 일원화된 체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경우에는 장애 판정과 배치가 일원화된 체계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장애 유아가 적절하게 배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진단 및 배치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다. 인적환경 개선 방향

1) 특수교사 배치 관련 중단기 및 장기 수급 방안 마련

현재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 배치는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다. 반면, 장애 유아의 질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점에서 많은 간극이 있다. 현장에서 유아특수교사 배치 관련 문제는 국가적 개입 및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다. 유아특수교사 양성부터 배치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유아특수교사 수급 문제는 해결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판단된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외에 사립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같은 기관에서도 특수교사의 배치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 유아특수교사 수급은 제한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 상의 유아특수교사 배치 원칙을 고수하기에는 현장의 부담을 심하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에 현 상황에서 중단기적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 장애 유아에 대한 전문적 개입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아특수교사 공급 방안으로 나누어서 방향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활용

장애아전문 및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 배치가 어려운 현 상황

에서 가장 큰 대안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활용이다. 실제 현장과 전문가 집단 일각에서 이에 관한 대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적인 것을 고집함으로써 현실을 간과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이에 관한 방안을 검토하고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일보하는 것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중단기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3) 교사 복지 및 처우개선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 수급이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교사 복지 및 처우 개선과도 맞물려 있다. 유아특수교사들에 대한 복지 및 처우 개선이 부분적으로라도 이루어질 때 교사 수급이 좀 더 진척될 것이라고 추정된다. 보다 장기적으로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해서는 유아특수교사 뿐 아니라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통합교실의 일반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에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4) 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유아특수교사 수급에 대한 법이 마련된 배경 역시 장애 유아를 위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사의 전문성 부분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라는 사실에 본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장애 유아 관련자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이에 교사 전문성과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입각하여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5) 원장 및 장애아통합반의 일반교사 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원장의 운영 철학이나 교사에 대한 지원 등은 장애 유아 서비스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해서 관련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교육 연수 기회 제공 및 지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 유아 담당 교사 뿐 아니라 장애 유아가 속하여 있는 반의 비장애 유아 담당 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 기관장의 이해와 협조, 장애 유아 담당교사와 일반 교사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애 유아를 위한 질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라. 물적 환경 개선 방향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아통합 교실 면적에 대한 법적 기준, 장애아통합교실 반편성 기준, 장애 유아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과 같은 물리적 환경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장애 유아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본 연구 면담 결과 여러 군데에서 지적되고 제안되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은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나가야 한다는 방향에서 장기적인 방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향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주관 하에서 소속 산하단체 혹은 지자체 수준에서 기존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수합하여 좋은 프로그램은 확산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 및 확산하고 생산하는 일을 전담할 기관을 지정해주고, 해당 인력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한다면 이 일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진다.

1) 장애 유아 개별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민간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의 지원 없이 다니고 있는 장애 유아를 위한 개별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경우에도 각기 다른 연령의 유아가 3명 배치된 경우나, 장애 유형과 정도가 각기 다른 유아가 배치된 경우 이들 유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과 교사 인력배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들과의 집단 면접 결과,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민간어린이집이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있는 장애 유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하고 보조하는 것이 필요함도 드러났다. 개별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제공을 위하여 전달체계가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지정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장애 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장애 유아 뿐 아니라 장애 유아의 부모 및 비장애 형제 지원 프로그램이 필

요하다.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해서는 기관과 가정의 협력과 연계 없이는 질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장애 유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관한 정보 부족 및 장애 유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장애 유아 가족 전부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악순환의 구조를 장애 유아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등으로 선순환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관련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바. 전달체계 관련 개선방향

장애 유아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여러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연계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장기적인 방안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안

기관장 면접, 교사 면접, 학부모 면접을 통하여 만족도가 높았던 장애아통합 및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유형과 우수 사례 기관 방문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수렴되는 장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장애 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뿐 아니라 유아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둘째, 장애 유아를 위한 개별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비장애 형제 지원 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가족지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었다. 셋째, 교사 교육 및 연수의 기회가 많았고, 기관 차원에서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했던 기준은 기관의 물리적 환경 측면 보다는 부모 만족도 측면을 우선시 하였다.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모나 교사의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높았던 기관 사례를 토대로 현실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점을 중심으로 중단기 방안을 하고자 하였다. 모든 우수 사례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지 않지만 일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와 기관장, 교사, 학부모 면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전문가 자문회의 등에서 제안되었던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장기 방안도출하고자 하였다.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향을 토대로 중단기 방안과 장기 방안을 제안하였고 다음에서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중단기방안		장기방안
전국단위 장애 영유아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영아, 장애유아, 입학유예아동, 초등학교 저학년 또는 고학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장애 유아 진단 및 배치 관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전달체계 활용 · 장애 유아 진단과 배치 위한 전담 인력 확보 및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아 진단 및 배치 체계 구축 · 장애진단 기준 표준화 · 검진부터 보육 및 치료기관까지 DB 구축 및 연계
인적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특교사 특별수당 30만원 추가 제공 ·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대상 유특교사 자격 취득 기회 제공(특수교육대학원 진학 등) · 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위한 연수 및 컨설팅 · 원장 및 교원 교육 및 연수 기회 제공 · 보조교사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특수교육과 신설 · 유특교사 급여 및 근무여건 개선 · 1:1 개별 맞춤형 교육 체계 마련 · 교사 자격 체계 정비
물적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위원회 구성을 통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 방안 마련 및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통합 교실 면적에 대한 법적기준 마련 · 장애통합 교실 반편성 기준 조정 · 편의시설 설치 지원확대
장애 유아 지원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아 개별 지원 프로그램 보급 · 장애 유아 부모, 가족 지원 프로그램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아와 가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인력 및 단체 운영비 지원
전달체계 정비 및 조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전달체계 활용하여 장애 유아 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 및 전달체계 간의 연계 기능 역할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달체계 조직의 역할 및 기능 정비 · 중앙 컨트롤타워 중심의 조직 구성

[그림 IV-2-1]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 지원체계 개선 방안

가. 중단기 방안

1) 전국 단위의 장애영유아 실태조사

장애 영아를 포함한 장애 유아, 입학유예아동, 가능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고학년까지를 포함한 전국단위의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 장애영유아 현황에 대한 자료가 추정에 근거하고 있고, 다양한 자격 취득 경로를 거쳐 얻을 수 있는 장애영유아 담당 교사들에 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실태조사 내용에 장애 유아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진행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장애영유아 관련하여 파악하여야 내용이 보육실태조사 내용만큼이나 방대하다. 장애영유아 현황, 교사 자격을 비롯한 교사 현황, 프로그램(장애영유아 개별/부모교육 및 상담/가족프로그램) 제공

종류, 내용 등, 치료프로그램 수, 종류, 내용, 치료기관과의 연계 등 조사해야 할 관련 내용이 방대하다. 둘째, 조사 내용 구성 및 조사 지침 전달 등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이 구성되어 관여하여야 한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 개입 없이는 질문 내용의 구성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고, 관련 내용이 조사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아 수집된 자료의 정확성에도 의심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 집단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질문 제작 및 조사 진행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 감독하여 진행할 수 있는 국가정책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현재 장애영유아 현황 파악, 교사 현황(유아특수교사, 특수교사 인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 파악, 장애영유아 지원체계인 인적환경,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및 치료 연계 등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의 부재는 국가 정책 실현에 많은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영유아 대상 전국적인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장애 유아 진단 및 배치관련 개선 방안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으로부터 배치까지의 지원을 받는 형태와 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가 의심되는 유아의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장애 유아 진단과 배치를 위한 새로운 기관 설립 및 증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단기적인 방안으로 국가에서는 기존의 전달체계에서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해당 기관에 대해서 일관된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업무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해당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지원 및 관리 감독을 시행한다.

3) 인적 환경 개선 방안

본 연구의 모든 기관장 및 교사 면접, 일부 학부모 면접에서 조차 공통적으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어린이집에서의 유아특수교사 배치 관련이었다. 다음에서 어린이집에 배치된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급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가)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수급을 위한 개선점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경우 의무교육 대상자이고 이에 따라 국가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부모는 자녀의 취원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이에 따라 장애 유아가 어린이집 배치를 희망할 경우 의무교육 간주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 배치되어야 부모와 국가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실행하게 된다.

또한 '배치와 상관없는 질적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소속의 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유아나 어린이집에 배치된 유아 모두 동일하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이와 같은 질적 교육과정이 운영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와 법에서 명시한 장애영유아 담당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 장애 유아 담당 특수교사 및 보육교사 수급을 위한 개선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에 배치된 유아특수교사 수급을 위한 개선 방안

어린이집에 배치해야 하는 유아특수교사는 시·도 교육청에서 선발하여(교원 임용시험 절차를 거쳐) 어린이집 파견 교사의 형태로 운영한다. 이에 따른 교원 수급을 위해 특수교육과가 있는 사범대학에 유아특수교육과를 신설하거나 특수교육과 또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유아특수교육을 복수전공 하도록 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한다. 이상과 같은 방안이 중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어린이집의 상황에서 유아특수교사가 유치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유치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할 때와 같은 동일한 근무 조건(급여,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이나 근무환경(보조 인력 및 제반 지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3명의 장애유아 담당 등)이 되지 않을 시에는 대학교 측에서 굳이 학과를 신설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또한 타 전공에 비하여 이수학점이 많이 요구되는 특수교육 분야를 복수 전공하려는 의향도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유아특수교사에 대한 차별화된 수당 신설 등으로 동기 유발 및 유도를 이끌어 내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에 대한 수당을 30만 원 정도 제공하는 것을 중단기적인 특수교사 수급방안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현재 대학 평가에서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가 취

업하는 경우에는 임용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평가 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2)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수급을 위한 개선점

연성대학교 및 한국재활복지대학에서 양성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예를 들어, 양성 학과를 신설하거나 비장애 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과정에 장애 유아 양성 과정을 포함하도록 한다.

한편,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고경력자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특수교육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체계 하에 교사 자격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는 특수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도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복지부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문턱을 제거 해주어야 한다. 현재 일부 교육대학원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라고 하더라도 교육대학원 재학과 졸업을 통하여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를 활용하여 특수교육대학원에서도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수교사 수급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보수교육, 컨설팅, 장학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 역량을 강화한다면,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 유아도 어느 정도 충분한 교육적·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제공

한국보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아전문 및 통합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장애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지원 등의 일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문 인력에 의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장학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취약보육사업과 관련해서 장애유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년 1회 또는 2회로 제한적인 사업이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하여 어린이집 순회를 통한 교사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비용의 대부분이 채용된 특수교사 한명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되어서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특수교사 한명이 해당 지역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벽찬 상황이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청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장학과 컨설팅

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국가적 지원 하에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장애 유아를 돌보고 있는 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이 교사들이 작성한 연간 IEP 검토 및 슈퍼비전 제공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사 연수 등을 통하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교사들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교사 힐링 프로그램 등도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교사들의 전문가들로부터 받는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의 요구에 수시로 부응할 수 있는 컨설팅 제공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유아종합지원센터장과의 집단면접에서 취약보육 교사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된 교사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을 표시함과 동시에 예산 등의 제약으로 년 2회기로 제한되고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보고하였다. 민간어린이집이나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장애담당 보육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량에 대한 갈급함이 많았고,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교사 만족도 상승뿐 아니라, 이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장애 유아를 위한 질 높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연수나 컨설팅 사업은 강화되어야 한다.

다) 원장 및 장애아통합반의 일반교사 교육 및 연수 기회 제공

장애 유아를 위한 서비스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장과 장애아통합반의 일반교사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하다. 이들의 장애 유아에 대한 이해가 선행하지 않고 이들과의 협조와 연계를 이루기는 용이하지 않다. 집체교육 뿐 아니라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보조교사 배치

현재 어린이집의 장애 유아 배치는 장애정도와 유형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한명의 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유아를 동시에 돌보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은 보조교사 지원이다. 또한 교사 연수와 휴가와 같은 교사의 복지와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보조교사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 물적 환경 개선 방안

장애아통합 교실 면적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 및 장애아통합교실 반편성 기준 조정 등과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구성하고 추진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복지부에서 주관하여 관련 학계, 단체, 및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해당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연구 수행 등의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을 마련한다.

5)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장애 유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상별, 장애유형별, 발달시기별에 따른 맞춤형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보급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장애 유아 개별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장애 유아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부모지원 프로그램, 비장애 형제를 포함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의 내용이 체계화되고 조직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전달체계도 정비하여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장애 유아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물리적 환경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장애 유아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였을 때 장애 유아를 포함한 그 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도 그 효과를 추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부모 뿐 아니라 기관장, 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모두 비장애 형제를 포함한 가족이 다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현재는 장애 유아가 다니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국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진행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과 같은 국가의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보급할 때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이 동반되어야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6) 전달체계 정비 및 조직화 방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장애 유아 지원과 관련된 전달체계를 장애 유아 지원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서 정비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발달재활지원센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등이 부분적으로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각 전달체계들 간의 연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비효율적이고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과 확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에서 제안하고 있는 장애아동지원센터와 같은 장애유아 지원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단기적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달체계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장애 유아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력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포함한 관련 운영비를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센터 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조직하여 장애 유아의 치료 등 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감독 되고 관련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앙센터 기능은 정부차원에서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혹은 국책연구기관에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관련 업무 진행에 따르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한다.

나. 장기 방안

중단기 방안에서는 장애 유아를 위한 질적인 지원을 위해 현실적으로 급박하게 해결해야 하는 사안 중심으로 방안을 제안하였고, 장기 방안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교사들의 경우, 장애정도와 유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입소순위에 따라 장애 유아가 배치되는 것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더불어서 종일 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교실면적이나 반 편성 기준이 비장애 유아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 어려움도 토로하였다. 한편, 경계선상에 있는 영유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이러한 유아에 대한 진단을 공식적으로 의뢰할 수 있는 기관 등이 없음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현재 가장 시급하게 원하고 있는 것은 보조교사 지원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장애 유아를 위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장애 유아 진단 및 배치 관련 개선 방안

가) 장애 유아의 진단 및 배치 체계 구축

장기적으로는 장애 유아의 진단 및 배치가 국가가 지정한 특정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의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질 시 최소한 장애 유아에 대한 진단과 배치에 관한 정보가 서로 공유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관련 일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동일한 장애 유아에 관한 정보가 서로 공유되어 장애 유아와 관련된 서비스 지원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 진단이후 어린이집 까지 연계될 수 있는 검진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장애 유아 진단과 배치는 국가가 지정한 특정 기관에서 특수교육, 임상심리, 복지, 의료, 발달 등과 같은 제 분야의 전문가 풀이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부모나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서의 요청이 있을 때,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풀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요청 유아의 진단과 배치를 부모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장애 진단 기준 표준화

현재 장애 유아의 진단 기준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와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의 해결도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고 부모와 요구를 수용하여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장애 유아 진단과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장애 유아의 검진부터 치료기관과의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한 관리

개별 장애 유아의 검진부터 어린이집까지의 연계 뿐 아니라 치료 기관과도 연계되어 지원 서비스 종류 및 지원 기간, 치료 효과 등에 관한 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감독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이루어져서 장애 유아 서비스 지원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인적 환경 개선방안

첫째, 특수교육과가 있는 사범대학에 유아특수교육과를 신설하거나 특수교육과 또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유아특수교육을 복수전공 하도록 하고, 이를 실현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실시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유아특수교사를 유인하고 배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조건과 근무여건(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유아특수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인력 배치도 갖추어서 장기적으로는 한명의 장애 유아 당 한명의 교사가 돌보는 맞춤형 형태의 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장애 유아 담당 교사 외에 원장과 장애아통합반의 일반교사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주기적으로 제공되고,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 및 대체인력이나 보조인력 지원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조직적인 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에 특수교사가 배치될 경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라는 두 개의 다른 자격에 대한 기능과 역할, 급여 등에 관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장애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에 관한 자격 체계가 일원화되어 각 자격에 대한 기능과 역할 등이 정리되고 체계화 되어야 한다.

3) 물적 환경 개선 방안

본 연구의 기관장 및 교사 면담을 통해서 종일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 상황에서 현재 일반적인 교실에서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그대로 장애아통합교실에서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장애아통합 교실 면적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가 선행되고, 관련 국외사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아통합교실 반편성 기준 조정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편, 편의시설 설치 관련 기준이 엄격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신청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편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중증의 장애 유아를 거부한다든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비용 지원 등으로 보다 많은 장애 유아들이 집과 근접한 지역에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어린이집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장애 유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마련 방안 강구

장애 유아 개별화교육 프로그램 및 장애 유아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 비용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현할 전문 강사 등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국 단위로 실현되어야 하며, 장애 유아나 가족이 특정 해당기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 이외에도 기관으로 오기 힘든 장애 유아 가정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인력 및 운영에 따른 재원 마련을 통한 프로그램 실현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유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애영아를 위한 가정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도 이루어져야 한다.

5) 전달체계 정비 및 조직화 방안

장기적으로는 장애 유아 지원관련 서비스를 관할하는 중앙정부 기구나 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장애 유아의 진단 및 배치, 장애아통합 및 전문 어린이집 교사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관하는 중앙 및 지역 전달체계를 관할하여야 하고, 그 전달체계 기관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일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혹은 다른 전달체계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관리 감독하는 정부 기관은 통일되어야 한다.

장애 유아 지원의 철학이나 목적이 완전통합을 지향하는 것인지, 부분통합을 지향하는 지에 따라 전달체계의 역할과 기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완전통합을 지향한다고 하면, 일반유아와 연계가 쉽게 이루어지는 전달체계가 중심이 되어 다른 전달체계와의 협력과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16a). 특수교육연차보고서.
- 교육부(2016b). 2016 특수교육통계 자료집.
- 교육부(2017a). 201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교육부(2017b). 2017년도 특수교육운영계획, 교육부특수교육정책과-5379.
- 권미경·최효미·최지은·김건희(2015).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I)-장애 영유아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김성애(2009). 특수교육 유치원과정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반 요건 고찰: 발견 및 진단·평가, 교사,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4(1), 213-236.
- 김성애(2011). 장애아동 이용 보육시설 통계 현황을 통한 특수교육 유치원 의무교육 간주 가능성과 한계성탐색, 유아특수교육연구, 11(1), 41-71.
- 김은영·이소현·유은영·송신영(2007).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 및 통합보육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현숙·이병인 (2012). 특수교육 유치원의 의무교육 질적 수행을 위한 인가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조사. 유아특수교육연구, 12(1), 111-135.
- 박현옥·강혜경·권택환·김은주·김진희·백유순(2010).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실행을 위한 질적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0(3), 209-239.
- 박현옥·강혜경·권택환·김은주·김진희·백유순(2011).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실시 방안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유아특수교육연구, 11(3), 175-204.
- 백운찬·김관주·조윤경(2011). 장애아동 전담보육기관의 현황과 교직원들의 현재 정체성 인식 및 미래 지향 방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3(4), 385-411.
- 보건복지부(2016).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7).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내부자료 (2017). 2017년도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육과정 등.

- 이계윤·박현옥·김주영(2017). 장애아보육강화연구(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체계를 중심으로)보고서.
- 이병인·김현숙(2012). 특수학교 유치원의 질적 운영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인식 및 요구조사. 유아특수교육연구, 12(3), 25-47.
- 이병인·이지효·이미정·김현숙·이지예·강성리(2011). 보육시설에서의 유아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시행에 대한 시설장의 인식 : 포커스 그룹 인터뷰, 유아특수교육연구, 11(10), 73-105.
- 이소현(2006). 장애 영유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질적 구성 요소: 정책적 제도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6(2), 83-107.
- 이소현·김주영·이수정(2007). 장애 영유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및 포괄적 지원 모형 개발. 유아교육연구, 27(1), 351-379.
- 이소현·박현옥·이수정·오세림(2013). 장애 유아 의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동향 및 지원요소 분석. 유아특수교육연구, 13, 209-231.
- 이소현·이수정·박현옥·노진아·윤선아(2014). 장애 유아 의무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및 지원 요구, 특수교육학 연구, 49(1), 373-401.
- 이소현·이수정·박현옥·윤선아(2012). 장애 유아를 위한 일반 유아교육과정 기반의 개별화교육계획 실행에 대한 유아특수교사의 인식. 유아특수교육연구, 12, 59-90.
- 이병인·김현숙(2012). 특수학교 유치원의 질적 운영을 위한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인식 및 요구조사. 유아특수교육연구, 12(3), 25-47.
- 이병인·이지효·이미정·김현숙·이지예·강성리 (2011). 보육시설에서의 유아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시행에 대한 시설장의 인식 : 포커스 그룹 인터뷰, 유아특수교육연구, 11(10), 73-105.
- 이정림·김은영·엄지원·강경숙(2012). 장애 영유아 통합보육·교육 현황과 선진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정소영(2017). 장애 유아 보육교사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의 관계, 유아특수교육연구, 17(3), 213-231.
- 조윤경(2009). 장애 관련법을 통해 본 장애아 보육의 질적 제고 방안 모색. 특수교육, 8(1), 163-183.

조윤경(2014). 의무교육 대상 장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유보통합에서의 과제와 해결 방안(pp. 18-36). 의무교육대상 장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유보통합에서의 과제와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 전국장애아동보육기관 제공기관협의회, 전국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웹사이트 및 법령]

나사렛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홈페이지 (검색일: 2017. 10. 1)

<http://cms.kornu.ac.kr/knuecse/>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홈페이지 (검색일: 2017. 10. 12.)

http://community.bu.ac.kr/ecse/sub1/sub1_2.jsp

법제처 홈페이지 (검색일: 2017.10.20.) <http://www.moleg.go.kr/main.html>

복지로 홈페이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장애아 보육료 지원' (검색일: 2017. 9. 13.)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lid=02&searchCtgId=001&welInfSno=293&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복지로 홈페이지.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검색일: 2017.9.13.)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lid=02&searchCtgId=001&welInfSno=329&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유아보육과 홈페이지(검색일: 2017. 10. 12.)

<https://www.knuw.ac.kr/?p=93&mode=tab3&idx=4>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5.30.] [보건복지부령 제497호, 2017.5.30., 타법개정]

- 「영유아 보육법」 [시행 2017.9.15.] [법률 제14597호, 2017.3.14., 일부개정]
- 「유아교육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32호, 2017.12.19., 일부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34호, 2017.12.19., 일부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70호, 2017.12.19., 일부개정]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16.12.2.] [법률 제14332호, 2016.12.2., 일부개정]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3.27., 타법개정]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17.10.13.] [보건복지부령 제527호, 2017.10.13., 타법개정]
- 「초·중등 교육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3호, 2017.3.21., 일부개정]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타법개정]
-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 [교육부령 제140호, 2017.12.1., 일부개정]

부 록

부록 1. 기관장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부록 2. 교사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부록 3. 학부모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부록 1. 기관장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기관장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1. 장애아 보육 현황 개요: 장애 유아 진단 및 배치
 - 1) 장애 유아를 귀하의 기관에 배치하는 과정은 어떠하십니까?
 - 2) 장애 진단과 기관 배치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규정으로 인해 보육에 있어 곤란을 겪고 계신 상황이 있습니까?
 - 4) 장애 유형에 따라 귀하의 기관에 입소시키거나 장애 정도에 따라 선별해서 받고 계십니까?

2. 교사 및 인력 관련
 - 1) 현재 시행중인 교사대 아동 비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 운영에 있어 인력 관련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3) 유아특수교사가 어린이집에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 교사 자격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주세요.

3. 물리적 환경
 - 1) 시설 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물적 환경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프로그램
 - 1) 귀 시설의 (통합) 프로그램 설명 부탁드립니다.
 - 2) 교사 대상 프로그램 설명 부탁드립니다.
 - 3)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 4)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시행중이십니까?

5. 현금 및 서비스 지원
 - 1) 가장 시급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2) 현재 잘 되고 있는 지원체계는 무엇인가요?
 - 3) 장애 보육에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록 2. 교사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교사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1. 유아특수교사의 경우 왜 어린이집에 안온다고 보시나요?
 - 1-1. 유아특수교사가 취업 시 가장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3. 장애아 보육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 3-1. 학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하십니까?
 - 3-2. 상담을 하면서 어떤 권유를 하시나요?

4. 일반교사와 장애아 담당 교사간 협력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5. 현재 장애영유아 보육을 함에 있어 가장 시급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6. 장애아보육을 할 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6-1. 기관에서 본인이 하는 역할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록 3. 학부모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학부모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1. 본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1.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시면서 가장 좋은 점과 가장 불만족스러운 점을 설명해 주세요.
3.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가 없더라도 보내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4.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에서 장애 유아 학부모로 겪는 불편은 무엇입니까?
5. 자녀의 초기 장애 진단부터 어린이집에 오기까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6. 국가가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을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가장 시급한 시스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보고 2017-05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행일 2017년 11월

발행인 소장직무대행 이미화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http://www.kicce.re.kr>

인쇄처 (사)한국장애인문화콘텐츠협회 02) 2279-6760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87952-18-3 93330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ChildCare *and* *Institute of*
Educ *on*

